

지역종합정보센터의 설립·운영모형

연구책임 : 김 선 기(수석연구원)

<요약 및 정책건의 >

I. 연구의 목적

- 정보통신기술(IT)의 비약적인 발달과 정보기기의 보급·확산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주민과 기업의 정보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체로서 지역정보센터를 설립,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따르면 모든 자치단체가 단계적으로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바, 본 연구는 기존 지역정보센터 정책의 검토와 센터의 설립·운영실태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지역정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바람직한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이 연구는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정책모형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연구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연구 대상은 개별 지역정보센터가 아닌 지역정보센터 전반에 관한 정책임

- 지역정보센터의 여러 유형중 지역종합정보센터에 중점을 두고 대안을 제시함
 - 지역정보센터의 추진주체중 공공부문의 역할에 초점을 둠
-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로 이루어져 있는 바, 문헌연구에서는 지역정보센터 정책, 제도, 외국사례 등에 관하여 국내외 참고문헌, 연구보고서, 법령집 및 인터넷 자료 등을 검색하였으며 조사연구에서는 사례지역에 대한 현지방문조사와 함께 행정자치부의 전국의 30개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실태점검자료 및 특화지역정보센터에 대한 조사자료를 분석하였음

Ⅲ. 연구내용

1. 지역정보화와 지역정보센터

- 지역정보화와 지역정보센터를 보는 시각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서 지역정보화의 사업영역과 위상을 재조명해 보고 그로부터 지역정보센터의 개념과 역할을 정리하였음
- 지역정보화의 개념은 정보시스템과 응용서비스 및 정보컨텐츠, 네트워크 및 제도 등 정보화의 구성요소들을 총체적으로 확충, 정비하는 개념으로 폭넓게 이해해야 하며 아울러 지역정보센터의 개념도 물리적 시설의 결집체의 의미와 함께 거점조직으로서 성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야 함

2. 지역정보센터의 유형별 실태와 평가

- 지역정보센터의 유형은 정보기능의 영역, 대상지역의 범위, 설립주체의 성격 등의 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 중앙정부의 지역특화정보센터, 사단법인 형태의 기초지역정보센터, 민간운영 지역정보센터 및 시·도의 광역종합정보센터에 대해 사례소개와 함께 운영실태를 살펴보았음
- 지역정보센터의 문제점은 상호간 복잡하게 인과적으로 얽혀 있어 정리가 쉽지 않지만 크게 정책·제도상 문제점과 운영상 문제점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음

3. 외국의 지역정보통신 거점시설 사례

- 지역정보센터 정책모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보통신거점시설의 사례로서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 유럽의 사례로는 영국의 WREN Telecottage, 벨기에 Antwerp의 Telepolis, 영국 Manchester의 MITP와 지방정보통신접근센터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일본의 경우는 지역정보통신거점시설의 전반적인 정비현황과 함께 北海道 「텔레컴센터」와 仙台市 「COMMINET 仙台」의 사례를 소개하였음

4.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운영 모형

-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운영모형을 정립하기 위해 먼저 지역종합정보센터 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①가상정보센터의 개념의 도입, ②센터

의 질적 내실화, ③센터지원의 차등화, ④중복적 사업에서 특성화된 사업으로 전환, ⑤수요자중심 센터운영, ⑥중앙주도형에서 지방주도형으로 전환 등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지역정보센터의 계층적 구조, 지역정보센터의 유형별 설립형태, 지역정보센터의 기능, 지역정보센터의 시스템구축, 지역정보센터의 연계화, 지역정보센터의 운영재원조달 등에 관한 대안과 후속적 행정조치로서는 지역정보센터의 추진체제 정비, 지역정보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운영조례 제정 등에 관한 구체적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음

IV. 정책건의

- 주민의 보편적 정보수요를 위한 지역종합정보센터는 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를 이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하여 단일 마스터플랜에 따라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함
- 지역종합정보센터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맞추어 광역종합정보센터 — 기초종합정보센터 — 마을정보이용센터의 3계층 구조로 구성함
- 광역종합정보센터의 설립형태는 초기단계에서는 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참여의 폭을 크게 하고 점차 운영성과에 따라 지방공사 또는 제3섹터를 거쳐 민영화로 단계적 전환을 모색하며 기초종합정보센터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사단법인 형태의 지역정보센터의 존폐에 대한 정리를 결정한 후 신규 기초종합정보센터의 구축은 자치단체 직영방식으로 추진하되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민관공동출자 방식 또는 민

영화로 단계적 전환을 모색함

- 광역종합정보센터는 지역정보화 거점기능, 정보중계기능, 호스트기능을 담당하며 기초종합정보센터는 교육, 홍보기능과 종합민원서비스창구기능을 통해 체험과 만남의 장으로 육성하다가 어느정도 기반이 잡히면 지역고유정보의 DB구축 및 정보유통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도록 단계적으로 기능을 정립함
- 지역정보시스템은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크게 지방행정분야, 지역산업분야, 지역생활분야로 나누어 DB를 구축하며 공통정보DB는 광역정보센터에서 담당하고 특화정보DB는 기초종합정보센터에서 담당하는 분담체제를 확립함
- 지역정보센터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창구를 일원화하고 메뉴관리 및 시스템간 연결을 위한 Host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시스템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스템활용을 극대화함
- 자치단체와 지역정보센터간 공동사업참여,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사무위탁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하며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지역정보화사업(지역정보센터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 지역정보센터 정책의 추진은 행정자치부에서 맡고 한국정보문화센터는 기금 및 기술지원을 맡는 분담체제를 정립하며 행정자치부와 지역정보센터에 관련된 중앙부처간 업무협의 및 조정을 위해서 「지역정보센터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함

- 지역정보센터정책을 새로운 방향전환에 따라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정보센터정책의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과 함께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아울러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지역정보화와 지역정보센터	6
제1절 지역정보화 추진과정	6
1. 중앙정부의 지역정보화	6
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12
제2절 지역정보센터의 개념과 역할	16
1. 지역정보화의 위상과 사업영역	16
2. 지역정보센터의 개념과 역할	24
제3장 지역정보센터의 유형별 실태 및 평가	33
제1절 지역정보센터의 유형	33
1. 정보기능의 영역에 따른 유형	33
2. 대상지역의 범위에 따른 유형	34
3. 설립주체의 성격에 따른 유형	35
제2절 지역정보센터의 유형별 실태 및 사례	37

1. 중앙정부의 지역특화정보센터	37
2. 사단법인 형태의 지역정보센터	41
3. 민간운영의 지역정보센터	49
4. 시·도의 광역종합정보센터	52
제3절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한 평가	56
1. 지역정보센터 정책·제도상 문제점	58
2. 지역정보센터 운영상 문제점	62
제4장 외국의 지역정보센터 사례	68
제1절 유럽의 지역정보센터	68
1. WREN 텔레카티지(Telecottage)	68
2. Antwerp의 Telepolis	72
3. 맨체스터의 MTTP와 지방정보통신접근센터	75
제2절 일본의 정보통신거점시설	77
1. 일본의 정보통신거점시설 개요	77
2. 북해도 텔레컴센터	79
3. 센다이(仙台)市の (株)「COMMINET 仙台」	80
제5장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운영 모형	82
제1절 지역종합정보센터 정책의 기본방향	82
1. 가상정보센터의 개념의 도입	84
2. 지역정보센터의 질적 강화	84
3. 정부지원의 차등화	85
4.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정보사업의 전개	85

5. 수요자중심의 지역정보화 추진	86
6. 지역정보센터정책의 지방주도형으로 전환	86
제2절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운영 모형	87
1. 지역정보센터의 계층적 구조	87
2. 지역정보센터의 유형별 설립형태 및 방식	89
3. 지역정보센터의 기능	102
4. 지역정보센터의 시스템구성	107
5. 지역정보센터간 연계화	119
6. 지역정보센터의 운영재원조달	123
제3절 지역정보센터의 추진체제 정비	127
1. 지역정보센터 추진체제의 개편	127
2. 지역정보센터 마스터플랜수립·추진의 일관성 유지 ...	130
3.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운영조례 제정	131
참고문헌	133
< 부 < 부록 1> 시·도별 지역정보센터 등록현황	137
< 부록 2> 주식회사 설립절차 및 관련법규	138
< 부록 3> 제3섹터형 지역정보센터 설립 근거법 규정 ..	140
	141

표 목 차

<표 2-1> 정부부처별 주요 지역정보화 추진사업	7
<표 2-2> 지역별 멀티미디어산업단지 추진현황	15
<표 2-3> 민원서류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자치단체 사례	16
<표 2-4> 지역정보화의 사업영역	19
<표 3-1> 지역정보센터의 유형별 특성	36
<표 3-2> 산업기술정보원 지역정보센터의 운영현황(1998. 5)	38
<표 3-3> 지역정보센터 구축시 기관별 역할분담	39
<표 3-4> 지역정보센터의 목적과 수행사업	41
<표 3-5> 지역정보센터사업 지원원칙 및 기준	43
<표 3-6> 정보통신부의 지역정보센터설립현황('97.말현재)	44
<표 3-7> 지역정보센터의 운영실태	47
<표 3-8> 지역별 공중망 서비스 실적('96. 1. 1~'96. 12. 31)	48
<표 3-9> 광역종합정보센터의 개요	53
<표 3-10> 청주지역정보센터의 이용자 특성	66
<표 4-1> 정보통신거점시설의 운영주체의 상황	78
<표 4-2> 정보통신거점시설의 기능별 상황	78
<표 5-1> 광역종합정보센터의 설립형태간 비교	93
<표 5-2> 기존 지역정보센터의 정리대안	98
<표 5-3> 지역정보문화관 설치구상(행정자치부)	101
<표 5-4> 지역정보센터의 기능	106
<표 5-5> 지역정보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	111

<표 5-6> 특화 정보센터의 특성과 교류가능성	122
<표 5-7>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보조사례 및 법적 근거	125
<표 5-8> 지역정보센터추진 관련기관의 역할	129

그림 목차

<그림 2-1> 지역정보화의 사업영역과 위상의 새 접근	23
<그림 3-1> 지역정보센터사업 추진절차	42
<그림 5-1> 지역정보센터의 계층적 구조	88
<그림 5-2> 지역정보센터의 추진체제	12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정보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컴퓨터와 광통신의 융합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T)의 비약적인 발달과 정보기기의 보급·확산에 힘입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주민과 기업의 정보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는 물리적 힘이나 자본 대신 정보가 생산과 권력의 원천이 됨으로써 국가발전에서 차지하는 정보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미 선진 각국은 정보화가 산업의 경쟁력제고와 국가발전의 핵심수단이란 인식 하에 정보화의 변화에 부응하고 나아가서는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¹⁾ 우리나라도 정보화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뒤늦게나마 1980년대 후반부터 각 중

1) 국가정보화전략으로는 미국이 199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N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계획, 일본이 1994년에 발표한 신사회자본구상, EU의 199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간 정보통신망(TEN: Trans European Network)구축, 싱가포르의 싱가포르-ONE계획 등이 있으며, 지역정보화 전력으로는 EU가 1984년부터 추진한 STAR계획과 1992년부터 추진한 Telematique 계획,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등지에서 1980년부터 시작한 Telecottage 운동, 미국에서 시작한 Teleport 구상, 그리고 일본 우정성의 teletopia 구상, 통산성의 New-media Community 구상, 건설성의 정보도시(Intelligent City), 농림수산성의 Greentopia 구상 등을 꼽을 수 있다.

양부처별로 소관분야에 대한 국가정보화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지역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정보화의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확실히 정보화는 근자에 들어 가장 빈번히 화두에 올려지는 용어가 되었으며 정보화사회의 장미빛 미래상을 표현하는 수많은 장황한 묘사 (grand metaphors)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²⁾ 그러나 단순한 가정에 근거한 이러한 현란한 수사만으로 정보화사회가 기대한대로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과대포장과 반신반의(hype and half-truth)의 차원을 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논의의 열기에 비해 뚜렷한 진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more heat than light).³⁾

정보화의 실체는 정보를 수집, 처리, 제공하는 체계의 확립을 뜻하는 바, 지역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축적,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체로서 지역정보센터를 설립,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지역정보센터는 초기단계에서 지역정보화의 기반조성(seeds)과 수요확산(Needs)을 주도함으로써 지방이 정보화라는 새로운 문화를 수용, 확산할 수 있도록 거점역할을 담당한다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여러 중앙부처에서 소관업무에 관해서 지역특화(전문)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한 사례가 있고 정보통신부에서도 시군에 사단법인 형태의 지역정보센터를 구축해 왔으며 최근에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별도의 법인으로 지역정보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

2) 예컨대 cyber space, virtual community, electronic society, virtual corporation, invisible city, wired city, teletopia 등의 수사적 표현을 들 수 있다.

3) S. Graham and S. Marvin, Telecommunications and Cities, New York : Routledge, 1996, pp. 4-11.

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따르면 향후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까지 단계적으로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운영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은 정책추진의 초기단계라 모범적인 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중앙부처간에 계획, 추진, 지원체제가 정립되지 않아 운영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지역정보센터 정책의 검토와 센터의 설립·운영실태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의 지역정보통신거점시설에 대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바람직한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참고자료의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지역정보센터정책의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한 새로운 정책모형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지역정보화와 지역정보센터를 보는 시각에 대한 이론적 논의이다. 지역정보화의 사업영역과 위상을 재조명해보고 그로부터 지역정보센터의 개념과 역할을 정리하였다.

둘째, 지역정보센터의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평가하였다. 우선 지역정보센터를 유형화한 후 기존 네 가지 유형의 센터에 대해 추진 실태와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제도측면과 운영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외국의 정보통신거점시설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유럽국가와 일본을 중심으로 참고가 될만한 정보통신거점시설에 대해 운영사례를 제시하였다.

넷째,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운영에대한 정책모형을 제시하였는바, 정책의 기본방향, 센터의 설립·운영모형, 정책의 추진체제 정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주제 및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범위의 제한과 관련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대상은 개별 지역정보센터가 아닌 지역정보센터 전반에 관한 정책이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개별 지역정보센터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대안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둘째, 지역정보센터의 여러 유형중에서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대상은 지역의 보편적 정보수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을 주도하는 지역종합정보센터이다.

셋째, 본 연구의 정책모형에서는 지역정보센터의 여러 추진주체중 지역정보화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와 지역정보화의 실질적 추진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은 문헌연구와 조사연구에 의존하고 있다. 먼저 문헌 연구에서는 지역정보센터에 관한 정책, 제도, 외국사례 등에 대하여 국내외 문헌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지역정보정책에 관련된 정부 및 산하연구기관 등의 선행연구, 법령집 및 인터넷 자료 등을 검색,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조사연구는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데 지역정보센터의 전반

적인 운영실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30개 지역정보센터에 대해 1997년에 실시한 「지역정보센터실태 점검표」에 의한 원시자료(raw data)를 분석하였으며 각 중앙정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특화(전문)지역정보센터의 실태에 대해서는 5월중에 별도의 조사표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유형별 지역정보센터의 구체적 운영사례는 광주광역종합정보센터와, 청주지역정보센터(CHAINS), 강원지역정보센터(KITEL)를 현지방문하거나 센터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제2장 지역정보화와 지역정보센터

제1절 지역정보화 추진과정

1. 중앙정부의 지역정보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범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나 방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⁴⁾ 다만 일부 중앙부처에서 국가정보화정책의 하위정책으로서 지역정보화 관련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들 사업들도 대부분이 계획단계이나 시행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은 원래부터 지역정보화를 목적으로 표방하고 추진된 것이 아니라 부처별로 소관분야에 대한 정보화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통신망의 확충, 산업의 육성지원, 과학기술 활성화계획을 지방으로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정보화사업은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지원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기관이 관여하고 있다.⁵⁾ 이 중에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지역정보화 사업의 내용은 <표 2-1>과 같으며 이들 부처 중 현재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정보화 사업을

4) 1997년 4월에 내무부에서 「지역정보화추진시행계획」을 마련한 바 있으나 동 계획은 계획수립과정으로 보나 계획의 내용적 범위에서 보나 엄밀한 의미에서 범 국가차원의 지역정보화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보기 어렵다.

5) 정책결정기관으로는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중앙부처가 있으며 정책집행기관으로는 한국정보문화센터(ICC), 산업기술정보연구원 등 산하기관들이 있고 정책지원기관으로는 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전산원, 정부통신정책연구원과 행정자치부 산하에 최근에 설립된 지역정보화지원재단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처는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이다.

<표 2-1> 정부부처별 주요 지역정보화 추진사업

주관부처	추진사업	주관기관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농어촌컴퓨터교실 농촌 정보화시범지역 육성 지역공공 DB 구축(지역정보센터) 지역공공통신센터 구축 운영 우체국 단위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 지역 홍보관 운영 	한국정보문화센터 한국정보문화센터 한국정보문화센터 지방 체신청/ICC 한국통신 한국통신부 한국통신/데이콤
산업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기술 정보유통 지역정보센터 운영 지방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중소기업 정보지원센터' 구축 - 중소기업관련 DB확충 	산업기술정보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과학기술지역정보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정보화사업체제 구축 - 지역공단정보수집체제 및 DB구축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연구개발정보센터 (KORDIC) 과학기술부
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수산 종합정보망 구축 농림수산 관련 S/W 개발 농어민 정보통신 이용교육 시범지역 운영 정보통신기기 보급 	농림부, 농촌진흥청 (재)농림수산정보센터 등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지역종합정보센터 설립지원 지역정보화 시범사업지원 지방자치단체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 농어촌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 육성지원 지방행정종합정보망(MOHA-NET)고도화 자치행정 정보화사업지원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용 컴퓨터 보급 	행정자치부/지방자치 단체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용 컴퓨터 보급 	교육부

출처 : 한국전산원, 「1997년 국가정보화백서」, 1997. P. 388

그동안 지역정보화에 관련된 정책을 가장 활발히 추진해온 중앙부처는 정보통신부이다. 정보통신부가 지역정보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때는 체신부하에서의 1988년 부터이며 산하의 한국정보문화센터, 우체국 등을 중심으로 정부부처 중 가장 다양한 정보통신기반확립, 지역정보화를 위한 시범사업, 지역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마인드 확산과 정보이용능력의 제고와 관련되어 있으며 대부분 산하 기관인 한국정보문화센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는 8개 지역 지방 체신청 단위로 설치·운영해 왔으며 각 지역별로 40여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체신청의 관리국이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여론조성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문화 운동과 관련된 지역주민 홍보 및 계몽에 관한 사항,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사업의 발굴 및 추진기능을 담당해오다 최근 1998년 7월 해산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로 재편중이다.

농어촌컴퓨터교실은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아래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격차 해소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되었다. 농어촌주민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이용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아래 전국 시·군지역에 순회(2년 주기) 운영되고 있다. 1988년 4월 전남 고흥군 녹동지역에서 시범 개설되었던 농어촌컴퓨터교실은 1997년 12월 현재 88개 교실을 운영,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경남 거제를 비롯한 53개 지역에서 운영중이다.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담당하는 사업들 중 지역정보화사업의 핵심은 지역정보센터의 구축사업이다. 지역정보센터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역내 생활의 정보화 및 산업화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력제고에 힘쓰며 나아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총 45개의 지역정보센터가 운영중이며 그 중 37개 지역정보센터가 공중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지역정보화사업은 과거 상공부의 지역정보화 사업에서부터 연속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정보화사업으로는 「산업기술정보유통 지역정보센터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경영여건이 취약한 지방소재 기업체의 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각종 산업기술정보의 획득과 활용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중심의 기술정보 확산체제를 구축하여 국가 전반의 정보유통 하부구조를 정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하고 산업기술정보원이 지역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의 산업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정보센터 운영사업은 지방중소기업의 정보수요의 창출과 중소기업정보화 촉진을 위한 것으로 그 대상이 특정적이며 전문적인 성격이 강하다.

현재까지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 인프라확충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내용을 보면 1994년 12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1996년에는 대구, 경남, 전남 등 3개 지역의 1단계 사업을 시초로 1997년 9월에 전남, 경남, 대구 지역에 대한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며 현재 10개 지역정보센터를 단계적으로 중소도시에 확대, 설치하여 지방에서 산업기술정보의 이용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의 지역정보센터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각 지역의

행정, 정책, 통계, 기업정보 등에 관한 정보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의 학계, 연구소 및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기술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설립되었다. 과학기술부의 지역정보화 정책에 대한 초점은 국가적 정보화사업의 일부분으로서 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정보센터 설립에 두고 있다. 과학기술부의 정보화사업은 크게 전문정보센터, 중앙정보유통센터, 지역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전문정보센터는 기계, 화학 등 분야별로 심층정보를 수집·가공하여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시스템을 운영하여 중앙정보센터는 이들 전문정보시스템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온라인 시스템 및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 공동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정보센터는 이렇게 구축된 과학기술정보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말단창구로서 해당지역내에 수입되는 정보의 입력, 정보서비스 관련 교육이나 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기술부의 지역정보화정책은 엄밀히 말해서 지역을 위한 지역정보화정책이라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1996년 10월까지 추진되어온 지역정보센터는 현재 과학기술부 시스템공학연구소 부설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에서 운영 중이다. 1994년 사업에 시작한 이래 창원/마산의 지역정보화 시범사업이 1996년에 완료되어 운영 중이며 시범사업기간 중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외국의 데이터베이스를 재가공한 것이 많고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는 과학기술인력, 지역내 생산업체, 연구인력 데이터베이스 등 몇 가지에 불과하다. 과학기술부는 마산/창원 지역정보센터를 모형으로 하여 광주, 대전지역에 산업기술유통망의 구축을 추진중이며 추후 전국 10개지

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지역정보화 정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전산화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과거 내무부시절부터 고도정보화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993년 12월 「지방행정전산화중·장기기본계획」(1993~2001)을 수립하여 행정정보화촉진기반과 자치단체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였으며, 중앙과 지방간 신속한 정보자료의 공유와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1994년 6월에 「지방행정종합정보통신망」(MOHA-NET)을 개통함으로써 방재관리, 선거관리 등 자치행정소관 뿐 아니라 어선관리(해양수산부), 광업관리(산업자원부)등 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까지 수용하여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지방행정전용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중에 있다.⁶⁾ 또한 민원서비스와 행정능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자지방정부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보화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1997년은 행정자치부의 역할에 일대 전기를 맞이한 해이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자치단체가 지역정보화의 주체로 규정되고 행정자치부가 이를 총괄 지원하는 중앙부처의 위치에 서게됨에 따라 종래의 지방행정전산화 위주에서 본격적으로 지역정보화를 주 업무로 다루게 되었다. 행정자치부는 1997년을 지역정보화의 원년으로 삼고 「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6) 행정자치부의 MOHA-NET에는 1998년 현재 행정자치부 소관의 방재, 긴급구조, 국가안전관리 등 9개 업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환경부 등 13개 국가기관의 단위업무와 연결되어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따라 1996년부터 각 가치단체별로 향후 지속적인 지역정보화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이 활발히 추진중에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는 이유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정보화사업들이 장기적, 종합적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기보다는 그때 그때의 개별적 사업수준에서 단편적으로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정보화의 효과가 성공적이지도 못했고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도 못했던 점에 대한 반성에 근거한다. 따라서 향후 자치단체가 지역정보화의 핵심적 주체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획, 제도, 인력, 시설 등 정보화기반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먼저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현황을 보면 1997년 말 현재 광주, 대전, 경기, 전남,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수립, 완료했으며 나머지 시·도에서도 자체 또는 용역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지역정보화 추진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보화전담조직의 설치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서울을 비롯해 11개 시·도가 구성을 완료하였고 여타 시·도에서도 연내 협의회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지역정보화전담조직은 충남에서 정보화심의관실을 설치하였으며 부산 등 9개 시·도가 지역정보계를 설치하고 있다. 지역정보화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행정자치부는 1997년 4월에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담은 「지역정보화촉진표준조례안」을 작성, 시달하여 각 자치단체가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바 1997년 말 현재 14개 시·도가 조례제정을 완료하였다. 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거점시설로서 지역종합정보센터의 설립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데 대구와 광주에서는 민관합작법인형태인 제3섹터로, 부산은 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센터의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대전에서는 설립을 추진중에 있고 여타 시·도에서도 금년을 목표로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중앙정부가 부처별로 소관분야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과는 별도로 1990년대 초기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역정보화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지역정보화사업은 중앙정부의 계획과 지원으로 추진된 것이 대부분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는 별로 많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사업은 대부분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앙정부에 의한 지역정보화사업과는 달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보의 생산, 유통에 주력하고 있으며 당해지역 주민의 정보수요에 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7) 한편 광역자치단체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아직까지 지역정보화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다만 최근들어 시·도에 위탁처리하던 각종 지방세 등 시·군 업무를 주전산기가 설치됨에 따라 대부분 자체처리로 전환하여 시·군·구 전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주전산기 설치, 전산조직, 운영인력 확보와 동시에 LAN을 구축하여 지역정보화의 환경을 정비중에 있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도 기반조성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8)

그동안 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사업은 거의가 지역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서비스 등 정보유통분야 - 즉 부문별 정보화분야 - 에 치중되어

7) 각 시·도별 독자적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다음 문헌을 참조.
김선기,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289권, 1997. 12. pp. 62-68.

8)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97~2000)」, 1997.p.9.

왔으며 정보통신하부구조 구축 및 정보산업육성은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몫으로 치부되어 왔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중앙정부의 구상에 따라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간에 미디어밸리 조성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어 주목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보면 컴퓨터, 영상, 오락, 통신, 방송산업을 망라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별 멀티미디어산업단지의 추진현황은 <표 2-2>와 같다. 즉 부산 및 인천광역시를 비롯하여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표방하고 있는 미디어밸리사업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멀티미디어 관련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 교육기능과 부대 지원기능을 집적한 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그렇지만 사업추진계획 및 의지와는 대조적으로 실제 집행단계에서 참여기업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 성과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⁹⁾

한편 정보화전진과 함께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오늘날 인터넷기술은 영상회의, 영상전화, 재택수업, 디지털방송, 주문형비디오, 원격진료 등 정보화사회에서 예견되어온 모든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정부의 구현은 행정개혁과 주민서비스 증대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재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인터넷 이용율은 아직까지 저조한 편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노력과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한 학교정보화시범사업 등에 힘입어 인터넷에 대한 지역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별 지역정보웹사이트의 구축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25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터넷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역자치단체는 1997년 8월 현

9) 미디어밸리축이 1997년 4월부터 9월까지 309개 소프트웨어업체의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산업지구에 대한 실태 및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5%만 입주의향을 보였으며 나머지는 입지하지 않겠다거나 의사표명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 1997년 9월 24일자).

재 모든(1997년 7월에 출범한 울산광역시 제외) 자치단체가 웹사이트를 구축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축한 웹사이트는 전체 235개 기초단체 중 51개인 것으로 집계된다.¹⁰⁾ 지금까지의 인터넷활용은 대부분이 자치단체의 홍보나 게시판 등 단순정보제공에 그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는 민원행정의 Non-Stop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어 밝은 전망을 보여준다.

<표 2-2> 지역별 멀티미디어산업단지 추진현황

지역	추진프로젝트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스마트21비전	- 부산을 미래 첨단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보단지 조성계획 - 투자규모('98~2008) : 1조3천억
인천광역시	미디어밸리	- 한국형 실리콘밸리의 건설을 위한 국책사업 - 투자규모(~2000) : 3조5천5백억
인천 송도	미디어밸리	- 소프트웨어 전용개발단지의 조성 - 투자규모(~2005) : 3조5천5백억
경기도 용인시	소프트웨어 공동연구단지	- 소프트웨어 공동연구단지(총43개의 민간 정보통신업체의 자발적 참여와 투자) - 투자규모(~1998) : 1천억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 종합정보통신센터의 구축(한국통신 충북본부의 지원) - 투자규모(1997~2000) : 5백56억
	청주「미디어밸리」	- 멀티미디어산업단지 조성 - 투자기간(1996~2000)
충청남도	복합첨단산업단지	- 복합첨단산업단지 개발(멀티미디어산업의 전략적 육성)
경상북도	첨단정보산업단지	- 첨단정보산업단지 조성(정보산업연구) - 투자규모 : 5백10억

10) 이 가운데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는 지역내 기업이나 대학의 웹서버에 사이트가 구축되었으며, 나머지 11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웹서버를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지침」, 내무부, 1997. 8. p. 33.

<표 2-3> 민원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례

지 역	민원행정서비스 내용(민원서류 신청)
춘 천 시	호적등초본, 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경력 증명,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자동차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 제적 등초본 등
창 원 시	호적등초본, 지적임야도등본, 수치지적부등본, 토지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자동차등록증재교부, 자동차등록원부,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세목별납세증명, 생활보호대상자증명, 농지원부등본, 토지가격확인원 등
부 산 시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가격확인원,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어선원부등본, 공장등록증명, 농지원부등본 등
서 울 도 봉 구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토지(임야)대장신청서, 지적도, 건축물가옥대장, 건축물신축대장·멸실대장·구가옥대장·현황도면·호적등초본·제적등초본 등
서 울 은 평 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 등
서 울 성 북 구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인 천 시	금융기관에 대한 권리실행청구사실신고, 화계증명원 등 22종 처리
전 남	교육훈련시설 휴지신고 등 23종의 전자민원처리

주 : 절차는 인터넷신청→요금 은행납입→우편배달의 방식으로 진행됨

제2절 지역정보센터의 개념과 역할

1. 지역정보화의 위상과 사업영역

지역정보화의 성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8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어서 1996년 초에 발표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지역정보화가 포함됨으로써 지역정보화의 추진을

둘러싼 대강의 골격이 잡히면서부터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보화의 실질적 주체로 규정되고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구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정보화촉진시행 계획」을 마련하는 등 각종 지원조치를 구체화하면서 지역정보화의 범위와 사업영역이 어느정도 가시화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선에서는 지역정보화의 사업영역에 대해서 상당한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정보통신부의 지역정보화를 보는 시각은 정부통신부가 주도하여 마련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같은 계획에서는 향후 2010년까지 고도정보화사회로의 진입을 목표로 5년 단위의 3단계 전략을 구상해 놓고 있으며 1단계 전략에서 범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10대 과제를 설정해 놓고 있다. 이를 열거해 보면 ①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②정보화사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③지식기반 고도화를 위한 학술·연구정보 이용환경조성, ④산업정보화촉진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⑤정보화를 통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활용도 제고, ⑥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보화 지원, ⑦정보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의 고도화, ⑧환경관리의 정보화, ⑨재난·재해에 대비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⑩선지외교·국방정보체제 확립 등으로서 지역정보화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성격을 규정하여 10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¹¹⁾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10대 중점과제란 각 중앙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별 업무의 정보화를 유형별로 집대성한 것에 다름아니며 지역정보화는 바로 이와 동열상에서 부문별 정보화의 일환으로 취급되고 있음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즉 지역

11)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기본계획”, available in <http://www.mic.go.kr/korea/info/lead/lead32.htm>, 1997

정보화를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정보화'로 보기보다는 '국가정보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의 하나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치 지역정보화가 행정정보화, 산업정보화, 교육정보화 등과 같은 부문별 정보화의 일종인 양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역정보화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시각은 다소 애매모호하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서는 지역정보화의 목표로서 ①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 ②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③행정능률 및 대민서비스개선의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고 지방행정전산화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어 일견 지역정보화의 포괄적 개념에 근접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추진시책들을 보면 '지방행정전산화'란 전통에서 아직은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본다.¹²⁾ 실제로 같은 계획에서 지역정보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나 주민의 삶의 질 제고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천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아울러 이와같은 지역정보화의 영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혼선은 근본적으로 행정자치부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수립했거나 수립중에 있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 체제나 내용구성에 있어서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없음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¹³⁾

광의의 지역정보화 개념에 따라 지역정보화의 사업영역을 폭넓게 설정할 경우 <표 2-4> 와 같이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12)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1997. p 14

13) 자치단체별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 반드시 획일적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지역적 특수성에 근거한 개별성과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개별성과 다양성은 어디까지나 지역정보화의 사업영역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

<표 2-4> 지역정보화의 사업영역

사업영역	내 용
지역의 부문별 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각 부문의 정보화란, 각 지역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자연적 특성을 감안하여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지역정보시스템을 구축, 활용하는 것 지방행정, 지역경제, 지역사회의 정보화로 구분될 수 있음
지역정보 통신하부 구조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정보통신하부구조란, 개별지역정보시스템들의 구축 및 이용자연결을 위한 물리적 시설과 이를 종합적으로 구축한 공공시설물로서 구체적으로는 물리적 네트워크(광케이블망, CATV망, VAN망 등)와 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된 공동업무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지역정보센터, 공중이용센터, 하이비전 등)을 말함. 지역정보통신하부구조는, 물리적 기반망과 응용서비스망 및 정보시스템 등 포괄하는 물리적 기반임.
지역정보 통신산업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정보통신산업은 지역의 정보화수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시스템설계,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등을 담당할 SI업체(시스템 전문업체)와 정보제공업자(IP), DB 제작업자 등을 포괄함. 지역정보통신산업은, 응용서비스와 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제공을 위한 지역내의 산업적·기술적·인적 기반을 의미함.

첫째는 지역의 부문별 정보화로서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자연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의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대체로 지방행정, 지역산업(경제), 지역사회(생활) 등 세분야의 정보화로 구분할 수 있다.¹⁴⁾ 주민이나 기업 등 정보수요자가 정보화를 통해 직접 혜택을 받는 과정으로서 협의의 지역정보화 개념에 해당한다. 둘째는 지역정보통신하부구조의 구축이다. 지역정보통신하부

14)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지침」, 1997. 8. p. 5.
정보부문을 구분할 때 지역이나 학자에 따라서 교육·연구, 문화, 도시, 교통, 관광 등으로 세분화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행정, 산업(경제), 사회(생활)의 세 부문에 통합할 수 있다.

조는 위에서 말한 개별 정보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실제 이용자들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컴퓨터, 네트워크, 단말기)과 이들의 종합적으로 집중 설치해 놓은 공공시설물 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광케이블망이나 CATV망과 같은 물리적인 네트워크는 물론 특수한 목적을 위해 구축된 다양한 CATV망과 같은 네트워크자원과 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된 공동업무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지역정보센터, 공중이용센터, 키오스크 등)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는 지역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이다. 지역정보통신산업은 해당지역에서 요구되는 정보화수요에 대응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설계와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등을 담당할 SI업체와 정보제공자(IP), 그리고 지역에 고유한 콘텐츠를 제작·유통시킬 수 있는 DB제작업자 등을 포괄한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지역정보통신하부구조는 물리기반망과 응요서비스망 그리고 정보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물리적 기반인 반면, 지역정보통신산업은 주로 응용서비스와 정보시스템 그리고 콘텐츠의 제공을 위한 지역내의 산업적·기술적·인적 기반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두가지의 기반위에 구축되는 부문별 정보화는 정보기술을 지역사회의 제 분야(행정, 경제, 생활)에 활용하는 것으로, 기술의 도입에 따른 효율과 효과의 증대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조직과 업무처리과정의 변화 그리고 관행과 제도의 변화를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정보화의 사업영역에 관련되는 정보화의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다음과 같다.¹⁵⁾

① 물리기반망(physical infrastructure) : 여러 가지 통신미디어(물리

15) 황주성, "지역정보화의 대상범주 및 사업영역", 「지역정부화의 이해와 전망」, 한국정보문화센터, 1998. pp. 258-261.

적인 회선설비, 전파자원 등), 전송설비, 교환설비 등의 통신체계를 활용하여 물리적인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반구조를 말한다. 최근 정보통신분야의 기술혁신과 광범위한 활용에 따라 물리기반망은 사회간접자본(SOC)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② 응용서비스망(application networks) : 물리기반망위에 교환체계, 노드, 라우팅체계, 서버 등 제반 정보통신체계를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논리적으로 (또는 가상적인 형태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말한다. 응용서비스망은 여러 가지 정보통신체계를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정보시스템간의 정보자원의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형태로 구축되며 정부시스템간의 관계 및 연계를 설정하는 소프트웨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s) : 특정한 정보통신기능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컴퓨터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복합체로서의 단위체계를 뜻한다. '단위체계'란 점에서 단위조직에 포함되고 그 조직을 지원하는 통신체계로서 intranetworking 등의 영역을 포함한다.

④ 정보자원(contents) : 전반적인 정보통신체계를 통하여 축적, 유통되는 모든 종류의 정보내용의 체계를 뜻한다. 정보자원은 텍스트위주의 문헌정보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유물이나 미술품에 이르는 모든 지적 산물의 축적과 특정한 지역의 지역정보까지를 포함한다.

⑤ 제도(institutions) : 정보화의 영향을 받는 사회의 조직과 질서의 전반으로서 법령체계와 정부정책의 골격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고도화된 정보통신서비스는 사회 전방의 조직을 정보화하고 세부업무의 영역까지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보화와 제도간의 상호작용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정보화의 개념을 협의의 지역정보화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즉, 앞서의 세가지 사업영역중에서 부문별 정보화를 지역정보화의 주된 사업영역으로 보는 입장이다. 정부의 정보화촉진기본 계획에서도 지역정보화를 10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간주함으로써 여타 부문별 정보화와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인상이다(그림 2-1참조). 따라서 정보화에 매우 중요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계획이나 정보통신산업육성계획은 중앙부처와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수립, 추진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계획과 접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정보화사업에서 단기적으로는 공공이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정보화의 초기단계에서는 새로운 문화의 수용차원에서 정보화의 불모지인 지방에 정보화의 씨앗을 뿌리고(Seeds), 지역의 정보수요를 확산시키는 일(Needs)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화의 가시적인 효과를 주민이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점에서 초기에 중앙정부 지원하에 추진해 온 지역정보센터의 설립 및 지역정보화 시범사업을 통한 공공이용정보시스템의 구축, 보급정책은 정보화의 지방확산에 어느정도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은 정보화의 초기단계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능력이 극히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정보통신하부구조의 구축이나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이 중앙정부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주도될 수밖에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지방행정정보화 등 분야별 정보화사업에 치중하는 형태로 지역정보화가 추진되어 왔다.

<그림 2-1>지역정보화의 사업영역과 위상의 새접근

(기존위상과 사업영역)

정보화요소	정보화 관련영역				센터 역할
제도	산업육성 및 법제도				정보유통
정보자원	컨텐츠영역				
	애플리케이션				
정보시스템	행정 정보화	산업 정보화	사회복지 정보화	지역 정보화	
응용서비스	네트워크 (초고속망, CATV 등)				
물리기반					



(새로운 위상과 사업영역)

정보화요소	정보화 관련영역				센터 역할
제도	산업육성 및 법제도				정보화거점
정보자원	컨텐츠영역				
	애플리케이션 (행정, 산업, 사회복지 등의 분야별 정보화)				
정보시스템					
응용서비스	네트워크 (초고속망, CATV, 정보센터 등)				
물리기반					

출처 : 황주성, “지역정보화 대상범위 및 사업영역”, 앞의 책, 1998, p. 271.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정보화사업이 공공응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보급에만 정책노력을 국한할 수는 없다. 지역정보화가 지역경제 및 사회전반의 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활용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때 지역정보화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정보시스템과 응용서비스는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컨텐츠, 네트워크 및 제도 등 정보화의 구성요소들이 총체적으로 확충, 정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나름의 독자적 사업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역정보화는 '국가정보화를 위한 부문정보화의 일환'이 아닌 '지역단위의 종합적 정보화'로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위상과 역할이 폭넓게 재정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정보센터의 역할도 협의의 지역정보화 개념에서 보는 정보서비스의 제공기능으로부터 광의의 지역정보화 개념에 입각한 다양한 복합적 기능으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정보센터의 개념과 역할

가. 지역정보센터의 개념

정보센터라고 불리우는 기구는 크던 작던 그동안 기존의 여러 조직체에서 특수한 목적에 따라 운영해 왔으며 지역정보센터의 경우도 목적과 주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개념이 사용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합의된 정의가 쉽지 않다. 대체로 지역정보센터를 보는 시각은 조직 또는 시설중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다.

예컨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지역 정보센터는 ‘정보화의 기본적 구성요소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및 운영인력을 갖추고 정보 그 자체와 각종 응용분야를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전담조직체로서 별도의 법인체로 설립, 운영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 조직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¹⁶⁾ 반면 기능과 시설을 부각시킨 개념으로는 지역정보센터를 ‘일정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과 주민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관리, 축적·유통, 가공·처리 및 조사·분석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정보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지역에 맞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지역사회 진흥을 도모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한 지역센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⁷⁾ 한편 일본 우정성의 견해는 지역정보센터를 ‘지역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핵이 되는 기능’으로 보고 있으며 반드시 시설로서 정비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⁸⁾

우리나라의 기존 지역정보센터를 보면 행정자치부가 시·도에 추진하는 광역정보센터의 경우는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화의 지역확산을 담당할 거점조직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가 추진해왔던 시·군의 지역정보센터는 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거점시설의 성격이 짙다. 지역정보센터가 물리적 기반의 한 부분으로서 정보화의 초기에 민간부문에서 제공할 수 없는 시설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역정보센터를 단순히 물리적 시설의 결집체로만 보는 시각은

16) 김택곤, “지역정보센터의 추진현황과 전개방향”, 「정보화로 가는 길」, 한국정보문화센터, 1997. 10. p. 14

17) 이수성, 황주성, 「지역정보센터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통신개발연구원 내부자료, 1989,

18) 郵政省情報通信局, 「地域情報化に関する調査研究會 最終報告」, 1995, p.59

지역정보센터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자칫 그 기능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대체로 기존의 지역정보센터를 볼 때 광역단위의 지역정보센터일수록 정보화의 추진주체로서 조직의 성격이 강한 반면 기초단위의 지역정보센터일수록 정보서비스제공을 위한 물리적 시설의 의미를 크게 띠고 있다.

나. 지역정보센터의 역할

지역정보센터의 역할 또는 기능을 획일적으로 설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역정보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센터의 유형과 필요성에 따라 도출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제로 지역정보센터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거나 지역정보센터의 범주에 속하는 시설은 규모나 종류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센터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또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¹⁹⁾ 지역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존 연구의 제언들도 의견에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²⁰⁾ 지역정보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국가마다 정보화의 수준과 지역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국가내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종합정보센터와 지역특화정보센터, 광역정

19) 예컨대, 지역정보센터의 형태로 대표적 사례인 Sweden의 텔레카티지(Telecottage)의 경우 훈련센터, 도서관, 우체국, 텔레감상, 커뮤니케이션센터 등의 기능이 복합되어 있으며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편지작성, 장부정리, 번역 등의 서비스기능과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의 구매상담을 지원하는 등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http : //www.worldtrans.org/gib/bov/bv-467.html](http://www.worldtrans.org/gib/bov/bv-467.html)

20) 여운방, “지역종합정보센터의 설립방안”, 「지역정보화발전 세미나」, 경기도, 1995. 9, pp. 90-92, 송인성, “지역정보센터 설치 및 육성방안”, 「행정과 전산」 제12권 제1호, 1990. 3, pp. 58-59, 황주성, “지역정보센터 설립방안”, 「지역정보화」 제2권, 1997. 11, pp. 33-34, 김성태, “지역정보센터의 역할과 기능”, 「지역정보화」 제2권, 1997. 11, pp. 22-27, 최남희, “지역정보화와 지역정보센터의 역할”, 「지방행정연구」 제11권 제4호, 1997. 2, pp. 54-56 등

보센터와 기초정보센터 그리고 공공지역정보센터와 상용지역정보센터간에는 설립의 목적, 취급정보의 차이, 기구의 규모, 운영방침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정보화의 초기단계에서 지역정보센터를 지역정보화의 확산을 위한 거점시설로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감안할 때 향후 지역정보센터가 담당하여야 할 역할을 어느 정도 규범적으로 제시해보는 일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정보센터는 지역정보화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체로서 한마디로 각종 지역정보화의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조직과 지역정보시스템 자체의 결합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정보센터는 센터를 필요로 하는 당해지역의 지역정보화 추진방향에 따라 역할과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지역적 특수성 반영과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란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지역적 특수성 반영의 측면에서 볼 때 지역정보센터에서 생산, 제공하는 정보는 지역의 수요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지역정보센터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도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란 측면에서 볼 때는 지역적 여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정보화사회의 정착을 위해서 지역정보센터가 담당해야 할 공통적 역할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보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수요와 공급측면에서의 환경 기반의 조성 등은 지역적 차이나 센터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정보센터가 지향해야 할 역할이다. 여기서는 보편적 서비스의 측면에 초점을 두어 구체적인 지역정보센터의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정보제공의 거점

지역정보센터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의 거점이 되어야한다는데 있다. 지역의 주민, 기업, 행정 이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 보유하여 DB로 관리할 뿐 아니라 타 지역정보센터 또는 타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결함으로써 정보통신하부 구조가 취약한 지역주민이 손쉽게 고도정보통신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속점(access point)의 역할에 비중이 두어져야 한다. 앞서 지역정보화의 개념과 위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의의 지역정보화측면에서는 각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이 지역정보화의 주된 사업영역이자 역할이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 관리하는 거점시설로는 VAN센터, 비디오텍스센터, PC통신센터, DB센터, CATV센터 등의 유형을 들 수 있다.

2) 정보통신산업육성의 거점

지역정보센터가 정보제공의 거점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정보컨텐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시스템설계 등에 관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함은 물론이다. 그동안 이 분야에 관해서는 중앙정부나 수도권소재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지방은 단순히 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 역할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위의 논의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지역정보화가 장기적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 나름대로의 정보통신산업기반이 조성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지역정보센터는 지역정보시스템에 필요한 각종 S/W개발업체, DB개발업체, 정보제공업체(IP), 인터넷사업자(ISP)들이 사업초기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공동이용을 위한 컴퓨터 및 통신장비와 기타 기본시설을 갖춘

임대사무실 등을 갖추고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3) 지역경제활성화의 지원

지역정보화에 거는 가장 큰 기대중 하나는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수단으로 하여 산업화과정에서 누적된 지역경제의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일이다. 전자상거래(EC : Electronic Commerce)와 통신판(구)매(teleshopping, tele-mediated retailing)가 일반화되고 금융시장이 통합, 고도화되는 정보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지역 내에서의 판매망확보, 신기술입수, 원료공급 등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방의 산업들에게는 국가 또는 세계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 상품소개, 원료조달 및 생산과 판매정보회득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며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의 바이어나 소비자와 직접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한 은행과 기업간 네트워크의 고급화로 금융지원 및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수 있다. 바로 지역정보센터는 지방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지원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적임기구이다.²¹⁾ 선진국의 경우 지역경제에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지역간에 새로운 형태의 불균형발전(unevent development) 또는 공간적 분극화(spatial polarization)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²²⁾

21) 예컨대 최근들어 제품광고 및 기업홍보차원에서 지방기업들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 홈페이지의 경우에도 개별기업이 각각 구축하는 것보다는 지역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개설하는 것이 정보검색상의 인지도 측면에서 유리하다.

22) Stephen Graham and Simon Marvin, Telecommunications and Cities, New Yoik : Routledge, 1996, pp. 166-170.

4) 지방정치참여의 활성화

지역정보센터는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을 제공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여 정치과정에서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민 네트워크(civic network) 또는 풀뿌리 네트워크(grassroot network)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²³⁾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정보센터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자원배분에 관련된 의견청취 및 수렴의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행정참여에 대한 관심과 시간부족,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커뮤니케이션 통로부족 등의 이유로 정치과정에서의 참여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과의 시·공간적 거리를 좁혀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은 지역정보센터로 하여금 풀뿌리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체제에서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던 시대로부터 이제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행정과 주민사이에 양 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시책홍보, 여론조사, 모니터링 등이 더욱 용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상의 가상공간(cyber space)에 시민광장(Civic Forum)과 같은 토론의 장을 만들어 지방정부와 지역구성원들간 현안문제에 대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컨센서스를 모으는 역할도 지역정보센터가 담당할 수 있는 적합한 역할이다. 이미 1970년대 초부터 전자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가 주요 이슈로 논의되어 왔던 미국의 경험은 첨단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민주주의의 다원화된 형태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사회집단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광범위하고 적실한 최신정보의 제공을 통해 불평 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²⁴⁾

23) Center for Civic Networking, Civic Promise of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 A Vision of Change, 1996

최남희, 앞의 논문, p. 54

5) 행정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창구

지역정보센터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행정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업무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정보센터는 행정전산화를 통한 각종 민원처리 및 제 증명발급을 위한 One-stop 또는 Non-stop 서비스창구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²⁵⁾ 뿐만 아니라 원격지에 거주하거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주민에게 통신망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다. 북미지역의 Free-Net이나 산타모니카의 PEN(The Public Electronic Network), 블랙스버그의 BEV(Blacksberg Electronic Village) 등은 지역정보센터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창구역할을 하는 모범적 사례이다.²⁶⁾ 또한 서구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원격근무자(teleworkers)의 사례에서 보듯이 유연적 업무과정(flexible working process)이 확대될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 대한 업무지원서비스도 지역정보센터의 역할중 하나가 될 수 있다.²⁷⁾ 이와같

24) Ivan Horrocks and Christine Bellamy, "Telematics and community governance : issues for policy and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Sector Management* Vol. 10 No.5, 1997, pp. 377-387

25)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개선은 현재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대표적 사례로서 3단계 사업으로 2002년까지 완료할 예정인 이 계획이 마무리되면 행정정보 DB구축, 민원서류감축, One/Non-stop 서비스, 거주지/창구무관 민원서비스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만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추진계획」, 「지역정보화」 제4호, 1998. 5, pp. 8-16,

26) 류승호, 「미국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현황과 성격」, 「지역정보화」, 제1호, 1997. 8, pp. 85-93.

PEN에 관해서는 <http://www.pen.ci.santa-monica.ca.us/>

BEN에 관해서는 <http://www.bev.net/> 참조

27) 원격근무(telecommuting, teleworking)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web site 참조

Gil Gordon Associate, "Telecommuting, Teleworking and other Officing" available

은 역할이야말로 지역정보센터가 지역정보화의 목표중 하나인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방안이 된다.

6) 정보수요확산의 거점

지역정보센터는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한 직접적 서비스활동이외에도 당해지역의 정보수요확산을 위한 정보화 마인드 및 정보이용능력 (information literacy) 제고를 위한 거점시설이 되어야 한다. 수요지향적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이용자의 정보이용에 대한 관심과 능력의 제고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지역정보센터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 및 전문인력양상을 위한 훈련의 거점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뉴미디어와 정보통신시스템을 주민이나 기업이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정보이용기술을 홍보함으로써 시연(demdnstration)과 체득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제3장 지역정보센터의 유형별 실태 및 평가

제1절 지역정보센터의 유형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설립된 지역정보센터는 크게 네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통산산업부 산하 산업기술정보원 등 중앙부처 및 산하 기관에서 소관업무에 관해 추진해온 지역정보센터가 있으며, 둘째는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센터(ICC)에서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하여 설립한 사단법인형태의 지역정보센터가 있다. 셋째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일부 자치단체에서 민간부문이 주체가 된 지역정보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넷째는 최근에는 몇몇 시·도에서 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지역정보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기존에 설립되어 있거나 계획중인 지역정보센터는 ① 정보기능의 영역 ②대상지역의 범위 ③설립주체의 성격 등 기준에 따라 다음의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3-1> 과 같다.

1. 정보기능의 영역에 따른 유형

1) 지역종합정보센터

지역에 대한 정보화사업의 종합지원 및 정보서비스에 대한 공동이용 시설로써 지역의 행정, 산업, 생활 등 모든 분야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

공하여 주민들의 보편적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설이다. 정보통신부에서 시·군단위에 설립한 지역정보센터와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도 단위의 광역정보센터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2) 지역특화(전문)정보센터

산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특수정보에 특화된 정보센터로서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처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구축하는 정보센터나 지역의 특수한 조건에 따라 기능이 특화된 정보센터를 말한다. 예컨대 중소기업청의 지역중소기업정보지원센터,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정보센터,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정보원 지역센터, 농림부의 지역농업정보센터, 지역관광정보센터, 지역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등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2. 대상지역의 범위에 따른 유형

1) 광역종합정보센터

시·도 또는 시도간 광역적 차원에서 설치하는 정보센터로서 시·도 단위에 필요한 정보시스템구축 등 정보화사업을 주도하고 하위 기초정보센터를 계층적으로 체계화하며 특화정보센터간의 연계, 조정을 통해 지역의 게이트웨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거점시설이다.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도 지역종합정보센터가 여기에 속하며 현재 제3섹터의 형태로 (주)광주광역정보센터와 (주)대구광역정보센터가 설립, 운영중에 있다.

2) 기초종합정보센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설치하는 정보센터로서 시·군·구 단위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며 정보화의

일선창구인 마을정보이용센터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화를 저변에 확산시키는 거점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형태의 지역정보센터와 민간부문이 주체가 되어 설립, 운영하고 있는 지역정보센터는 거의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역정보센터에 해당한다.

3) 마을정보이용센터

지역정보화의 전초기지로서 읍·면·동 단위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주민 등 정보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장소를 말한다.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에 정보이용기를 비치하여 주민의 정보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시설이다.²⁸⁾

3. 설립주체의 성격에 따른 유형

1) 공공지역정보센터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기금 등 공공자금을 투입하여 설립한 정보센터로서 정보화의 지역확산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점시설이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센터가 이에 해당하며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이 합자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제3섹터형 지역정보센터도 설립목적이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유형에 가깝다.

28)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마을단위정보이용센터는 도시에서 원격에 위치한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정보이용센터가 주민의 정보기기 공동이용시설이란 점에서 반드시 농어촌지역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2) 상용(민간)지역정보센터

민간부문이 주축이 되어 자기자금으로 설립, 운영하는 정보센터이다. 주로 지역내 기업들이 상호제휴하거나 수도권 대기기업이 지방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지방기업들과 연대하여 설립하는 특성을 띠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민간부문이 주축이 되는 만큼 속성상 상업성을 떨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으나 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또다른 대안으로서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²⁹⁾

<표 3-1> 지역정보센터의 유형별 특성

형태 \ 기준	정보기능의 영역	대상지역의 범위	설립주체의 성격
중앙부처설립 지역정보센터	특화정보센터	기초정보센터	공공정보센터
사단법인형태 지역정보센터	종합정보센터	기초정보센터	공공정보센터
민간부문설립 지역정보센터	종합정보센터	기초정보센터	상용정보센터
시·도 설립 지역정보센터	종합정보센터	광역정보센터	공공정보센터

29) 김상욱, "지역정보화의 의미와 효율적 추진방향", 「지역정보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행정자치부, 한국정보문화센터, 1998. 4, p. 82.

제2절 지역정보센터의 유형별 실태 및 사례

1. 중앙정부의 지역특화정보센터

중앙부처가 직접 설립, 운영하는 지역특화정보센터에 관해서는 개념 정의가 분명치 않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실태 파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대체로 지역특화정보센터로서는 중소기업청 지역중소기업 정보지원센터,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의 지역정보센터,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보원(KINITI)의 지역정보센터, 농림부의 지역농업정보센터, 지역관광정보센터, 지역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 지역정보센터의 개념에 가장 근사한 산업기술정보원의 지역정보센터와 연구개발정보센터의 지역정보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산업기술정보원의 지역정보센터는 경영여건이 취약한 지방소재 기업체의 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각종 산업기술정보의 획득과 활용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중심의 기술정보 확산체제를 구축하여 국가 전반의 정보유통 하부구조를 정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구 통산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하고 산업기술정보원이 지역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의 산업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목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정보센터 운영사업은 지방중소기업의 정보수요의 창출과 중소기업정보화 촉진을 위한 것으로 특징적이며 전문적인 성격이 강하다.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지역정보센터 운영사업을 위하여 1990년 4월 산업연구원 부설이었던 산업기술정보센터를 산업기술정보원(KINITI)으로 독립시키고 이것을 산업체를 위한 전국적인 정보유통기관으로 정립시킴과 동시에 산하에 있는 10개의 지방분원의 기능을 확대·발전시켜 지역정보센터로 발전시킬 계획을 수립하였다. 초기

에는 중앙산하조직으로 지방정보센터를 운영하되 기능의 확충 및 독립채산성의 확보를 통해 점차 독립성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산하의 독립기관으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출발하였다.

주요기능을 보면 ①국내의 산업·무역·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관리·보급 및 DB제작, ②국내의 산업기술동향의 조사·분석 및 연구, ③정보의 수집·처리·관리·보급에 관한 표준화연구 및 기술개발, ④전자계산조직을 활용한 정보처리서비스의 제공, ⑤정보의 이용촉진을 위한 계몽 및 인력양성, ⑥산업기술정보망 및 지역정보보급체계의 구축, ⑦정보수요의 조사·분석, ⑧국내의 관련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정보유통, ⑨국내 DB목록 작성, ⑩정부의 정보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등으로 되어 있으며 국내외 주요기관을 IP로 확보하여 다양한 DB를 구축하고 있다. 참고로 산업기술정보원 지역정보센터의 개략적인 운영현황을 소개하면 <표 3-2>와 같다.³⁰⁾

<표 3-2> 산업기술정보원 지역정보센터의 운영현황(1998. 5)

지역센터명	개소일	인력 (행정요원)	회원 (개, 처)	정보조사·분석 서비스건수
서울지역정보센터	94. 3	7(1)	4,507	21,011
부산지역정보센터	72. 1	4(1)	1,201	47,077
대구·경북지역정보센터	78. 5	5(1)	944	2,137
인천지역정보센터	83. 9	4(1)	1,211	5,966
광주·전남지역정보센터	82. 7	3(2)	957	1,509
대전·충남지역정보센터	79. 7	5(2)	1,125	11,319
경기지역정보센터	93. 4	5(1)	1,410	12,462
강원지역정보센터	89. 12	3(1)	321	607
충북지역정보센터	87. 3	4(1)	462	2,230
전북지역정보센터	84. 11	4(1)	737	1,467
경남지역정보센터	77. 10	4(1)	811	2,822
울산지역사무소	96. 10	3(1)	208	1,762

30)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산업기술정보원 지역정보센터 구축·운영현황」, 내부자료, 1998. 5

1998년 5월 현재 산업기술정보원의 지역정보센터는 전국에 11개 지역정보센터와 1개 지역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공중망 서비스인 KINITI-IR과 인터넷 웹서비스망인 종합기업서비스전산망(Inno-Net)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정보센터 구축시 추진주체간 역할분담을 보면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공업기술원, 산업기술정보원 등의 기관이 맡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동안에 예산지원과 자료수집을 지원하는 미미한 기능밖에 없으며 특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면에는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표 3-3> 지역정보센터 구축시 기관별 역할분담

기 관 명	역 할 분 담
지방자치단체	○ 관련자료 수집 및 사업예산 지원 - 지역내 상호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행정지원
공업기술원	○ 공업발전법상 공기반과제 주관기관 - DB자료 표준화(KINITI와 협조하여 추진) - 시험기기·장비 DB, 전문인력 DB 자료수집 및 동 DB 관리 - 지역정보화정책협의회 구성·운영
산업기술연구원	○ 공업기술원으로부터 수탁받아 실질적 사업수행 - DB설계·제작 - S/W 개발 및 DB 운영·관리 - 정보유통망 구축·운영 및 정보검색교육(유관기관, 기업체 대상)

출처 : PC통신 열린 정부(상공자원부 산업기술국), 「산업·기술 지역정보화모델구축사업추진계획」, 1994. 11

다음으로 과학기술부의 지역정보센터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각 지역의 정보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의 학계, 연구소 및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기술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높

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설립되었다. 과학기술부는 지역정보화정책에 대한 초점을 국가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정보센터 설립에 두고 있으며 크게 전문정보센터, 중앙정보유통센터, 지역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정보센터는 기계, 화학 등 분야별로 심층정보를 수집·가공하여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며 중앙정보센터는 이들 전문정보시스템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온라인 시스템 및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 공동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정보센터는 이렇게 구축된 과학기술정보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말단창구로서 해당지역내에 수집되는 정보의 입력, 정보서비스 관련교육이나 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지역정보센터는 과학기술처 시스템공학연구소 부설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창원/마산 기계·재료기술정보센터가 1994년 3월에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1998년 하반기에 대전과학기술정보센터가 설립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고 장차 이를 전국적으로 10개 지역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창원/마산 센터는 한국기계연구원내 연구부서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공중망서비스인 ICOMM을 통해 유·무상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998년 5월 현재 단체회원 14개소와 개인회원 1,920을 확보하고 있다.³¹⁾ 대전과학기술정보센터(대전지역종합정보센터)는 현재 기 구축되어 있는 과학기술정보센터를 기반으로 자치단체와 기업·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주식회사 형태의 지역종합정보센터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설립자본금을 모집중이다.

31) 단체회원의 회비는 연 200만원이며 개인회원은 연 10만원이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센터 운영현황자료」(내부자료), 1998. 5.

2. 사단법인 형태의 지역정보센터

정보통신부는 1994년부터 지역의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실용사업 위주의 지역정보화정책의 일환으로 시·군 단위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역정보센터는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역내 생활 및 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쟁력 제고에 힘쓰며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3-4> 지역정보센터의 목적과 수행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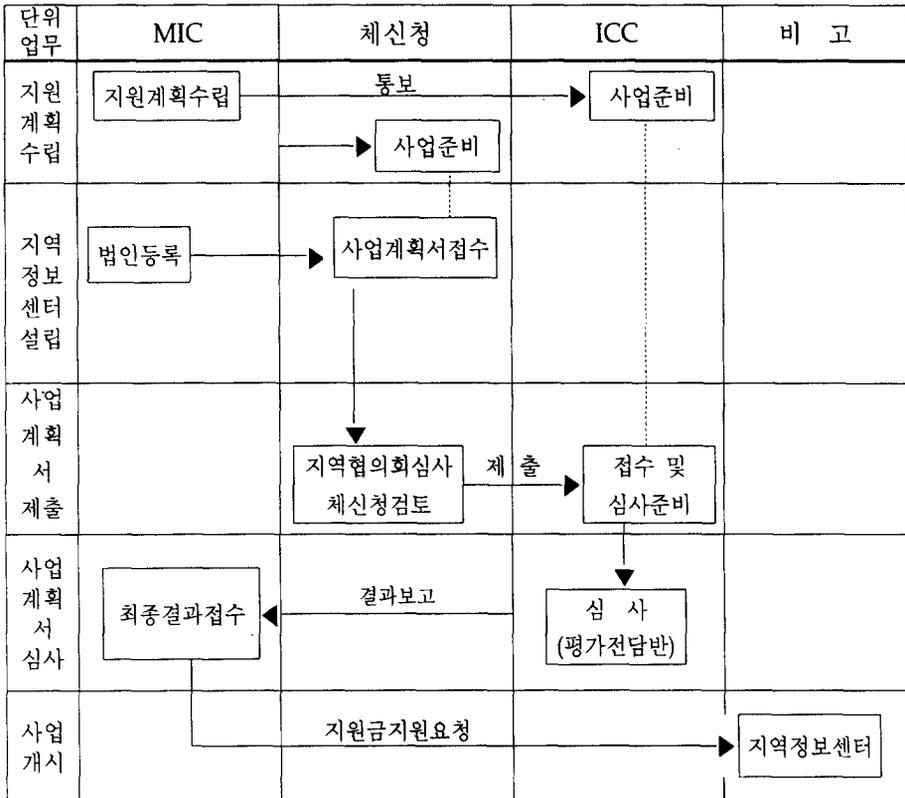
구 분	내 용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 ○ 지역내 생활정보화 및 산업정보화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력 제고와 국가발전에 기여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연구 및 진흥활동 ○ 지역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서비스에 필요한 업무 ○ 지역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조사연구 및 용역사업 ○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조사연구 및 용역사업 ○ 지역정보화를 위한 홍보, 계몽, 교육활동 ○ 기타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출처 : 정보통신부, 「1996년 국정감사 자료」, 1996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은 <그림 3-1>에서 보듯이 지원계획 수립→지역정보센터 설립→사업계획서 제출→사업계획서 심사→사업개시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부, 각 지방체신청, 한국정보문화센터가 전체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지역의 참여부분은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가 관여를 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내 기관 및 단체의 참여는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그림 3-1> 지역정보센터사업 추진절차



주 : MIC : 정보통신부, ICC : 한국정보문화센터

출처 : <http://arom.etri.re.kr.80/htdocs/icc/regional/regi06.html>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센터에 의해서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이 되면 정보통신부에서 지역정보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지원기준은 <표 3-5>과와 같다. 일단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할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은 기준에 따라 3년간은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화촉진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에는 자금지원의 중단 또는 필요성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 발전이 의문시되고 있다.

<표 3-5> 지역정보센터사업 지원원칙 및 기준

지원원칙	지원대상	정보통신부 산하법인으로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지역공공DB 구축을 위한 지역정보화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역
	지원기간	3년
	지역선정	지역정보화 평가전담반에서 선정
지원기준	1차년도 사업	당해연도 지역공공DB 개발운용자금의 30% 이상을 자체기금으로 확보한 지역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70%까지 지원(자체확보기금 비율이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
	2차년도 사업	당해연도 지역공공DB 개발 및 확장소요자금의 50% 이상을 자체기금으로 확보한 지역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50%까지 지원
	3차년도 사업	당해연도 지역공공DB 개발 및 확장소요자금의 70% 이상을 자체기금으로 확보한 지역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30%까지 지원

출처 : 정보통신부, 「1996년 국정감사 자료」, 1996.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추이를 보면 1994년에는 청주, 순천 등 18개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지원을 개시하였으며, 1995년에는 논산, 경주 등 12개 지역정보센터, 그리고 1996년에는 장흥, 원주 등 7개 지역정보센터, 1997년에는 부천, 홍성 등 8개 지역정보센터에 설립자금을 지원해 왔다. 동 사업은 정보화 의지가 강한 지역을 선정, 정책적으로 우선 지원함으로써 지역정보화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으로 <표 3-6>에서와 같이 1997년 12월 현재 전국의 45개 지역에 지역정보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³²⁾

<표 3-6> 정보통신부지역정보센터설립현황('97.말현재)

주관기관	지역	센터명	설립일(서비스개시일)	서비스명
서울청	의정부/양주	의양지역정보센터	'94. 5.27(95. 6. 1)	의양텔
	강화	강화지역정보센터	'94. 6.10(95. 5. 8)	MANITEL
	안산	안산지역정보센터	'95. 7. 3(96. 9.10)	서부텔
	성남	성남지역정보센터	'97. 8. 7(98. 3)	
	부천	부천지역정보센터	'97. 8. 7(98. 3)	
부산청	거창	거창지역정보센터	'94. 5.29(95. 5. 8)	KCTEL
	밀양	밀양지역정보센터	'94. 5.24(95. 4. 1)	MIRITEL
	산청	산청지역정보센터	'94. 5.30(95. 6. 1)	친환경네트
	양산	양산지역정보센터	'94. 8.25(95. 6.25)	양산텔
충청청	태안	태안지역정보센터	'94. 4.28(95. 5. 8)	TAEANITEL
	청양	청양지역정보센터	'94. 5.20(95. 6. 1)	칠감텔
	청주	청주지역정보센터	'94. 5.26(95. 2.16)	CHAINS
	보은/옥천/영동	금강지역정보센터	'95. 3.13(96. 9.10)	금강텔
	공주	공주지역정보센터	'95. 4.14(96.10.11)	WINS
	논산	논산지역정보센터	'95. 4.14(96. 7.26)	NAIS
	충주	충주지역정보센터	'96. 1.18(97. 7.10)	충주텔
	예산	예산지역정보센터	'96. 3.27(97. 9.30)	예산텔
	홍성	홍성지역정보센터	'97. 8. 7(98. 3)	
전남청	해남	해남지역정보센터	'94. 5. 3(94. 8.16)	HINTS
	순천/광양	동부권지역정보센터	'94. 6. 3(95. 5. 8)	전남동부텔
	목포	목포지역정보센터	'94. 6. 3(95. 5. 8)	MAINS
	장성	장성지역정보센터	'95. 4.15(96. 7.26)	방울섬
	함평	함평지역정보센터	'95. 4.15(96. 6.21)	H I T
	나주	나주지역정보센터	'95. 4.15(96. 6.21)	NINS
	장흥	장흥지역정보센터	'96. 5. 3(97. 8.12)	장흥텔
	여수/여천	여수여천지역정보센터	'96. 5. 3(97. 7. 1)	여수여천지역정보
	영광	영광지역정보센터	'97. 8. 5(98. 3)	
	영암	영암지역정보센터	'97. 8. 5(98. 3)	
경북청	담양	담양지역정보센터	'97. 8. 5(98. 3)	
	구미	구미지역정보센터	'94. 5.30(95. 5. 8)	KUMITEL
	영덕	영덕지역정보센터	'94. 5.30(95. 3.16)	EASTEL
	안동	안동지역정보센터	'95. 8.25(96. 7.26)	ADRIC
	경주	경주지역정보센터	'95. 8.25(96. 6. 8)	
전북청	진안	진안지역정보센터	'94. 6. 3(94. 9.15)	MAITEL
	익산	익산지역정보센터	'94. 5.30(95. 6. 1)	
	군산	군산지역정보센터	'95. 8.25(96. 7.26)	K I S
	김제	김제지역정보센터	'95. 8.25(96. 6.21)	KimjeNet
	남원	남원지역정보센터	'96. 5. 3(97. 8.30)	늘부텔
	전주	전주지역정보센터	'97. 7. 9(98. 3)	
	정읍	정읍지역정보센터	'97. 7. 9(98. 3)	
강원청	강릉	강릉지역정보센터	'94. 5.25(96. 3.26)	삼정텔
	춘천	춘천지역정보센터	'95. 8.25(96.10.11)	호반텔
	속초	속초지역정보센터	'96. 6.28(97. 9.30)	설악텔
	원주	원주지역정보센터	'96. 12. 2(97. 8.12)	원주텔
경북청	제주	제주지역정보센터	'96. 4.14(94.10. 1)	SAMDATEL

출처 : 한국정보문화센터 「'97 지역정보센터일람」, 내부자료, 1997

한국전산원, 「1997 국가정보화백서」, 1998, p. 393.

정보통신부, 「'97 정보통신연감」, 1998, p 1082에서 작성.

32) 이 가운데 1997년에 설립된 부천, 성남, 홍성, 담양, 영광, 전주, 정읍 등 8개 지역의 지역정보센터는 1998년 8월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정보센터는 지역의 행정기관, 언론기관, 교수, 주민 등 지역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공공법인(사단법인)형태로 설립되었으며 정부는 설립·운영초기에 재원 및 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지역정보센터에서는 지역의 종합생활 DB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이용교육, 지역정보화사업 연구, 홍보사업 등을 주요기능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가장 주 업무인 지역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발과정은 과제수행지역의 대학연구인력이 S/W 개발을 담당하고 지역의 공공기관, 주민 등의 정보제공자로부터 입수된 원시정보를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맞게 가공, 입력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개발분야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역소식을 비롯하여 생활·교육·건강·행정·민원·교통을 포함한 생활정보, 유명관광지 및 숙박업소, 음식점 안내 등을 포함한 관광정보, 특산품 주문판매, 영농기술, 영농상담 등의 산업정보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개발되었다. 1차로 개발된 데이터베이스는 공중망인 HiNET-P에 접속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해남지역정보센터가 개발한 'HINT'시스템이 1994년 8월 16일 최초로 공중망을 통해 서비스를 실시한 후, 1995년 18개 지역이, 그리고 1995년에 신설된 12개 지역정보센터에서는 1996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정보센터의 운영실태를 행정자치부에서 1997년에 조사한 「지역정보센터 실태점검표」의 원시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표 3-7>과 같다. 먼저 센터의 물리적 환경인 입주형태를 보면 조사 대상 30개 지역정보센터 중에서 유상임대를 하고 있는 곳은 금강과 순천/광양 두 곳뿐이며 나머지 28개 지역정보센터는 무상임대형태이고 그중 13개소는 시·군청

사를 무상으로 빌어서 사용하고 있다. 지역정보센터의 인력현황을 보면 청주가 23명(상주인력 8명 포함), 강릉이 14명(상주인력 3명 포함)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고 여타 지역정보센터들은 거의가 5명이내의 인력규모이며 그나마 상주인력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나 센터의 실질적 운영이 곤란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가입회원을 보면 청주가 30,665명으로 어느 정도 회원을 확보하고 있을뿐 회원이 만명을 넘는 센터가 6개소에 불과해 센터의 정보이용이 극히 부진함을 알 수 있다. 수입과 지출은 센터의 설립년도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상호 비교가 어렵지만 대체로 ICC의 지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센터는 18개소로 이미 상당수의 지역정보센터가 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운영이 어려운 상태임을 보여준다. 센터의 어려운 재정여건은 지출구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전체중 14개소가 총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고 있으며 그나마 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을 제외한다면 인건비 비중은 훨씬 커질 것을 감안 할 때 센터가 현재의 재정여건으로 정보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전체 센터중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웹서비스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9개소에 불과한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표 3-7> 지역정보센터의 운영실태

센터명	공종명	입주형태	직 원 (상주직원)	가입 회원	단체 회원	전담 연구원	수입	지출	ICC 지원금	지자체 보조금	인건비 (지출대비비율)	WEB 구축
의양	의양텔	무상임대	1(1)	3216	0	0	14400	25000	12400	0	14000(0.56)	무
안산	서부텔	공공기관내	3(3)	1800	10	5	27200	15257	9170	15900	12688(0.83)	무
강화	마리텔	군청사내	1(1)	1893	90	0	14000	14000	14000	0	0(0.00)	무
강릉	삼정텔	무상임대	14(3)	2097	0	2	57763	57763	8163	5000	21000(0.36)	무
춘천	호반텔	무상임대	3(2)	1544	0	0	66406	66406	18000	0	25600(0.39)	유
청주	CHAINS	무상임대	23(8)	30665			92845	7534			42920(0.58)	유
금강	금강텔	유상임대	6(3)	1500	21	16	94659	83080	18500	30000	24000(0.29)	유
공주	WIN	무상임대	5(1)	2800	0	0	2960	29600	17600	0	0(0.00)	무
논산	NAIS	시군청내	2(1)	2764	66	0	77080	37623	23272	50000	5066(0.13)	유
청양	칠갑텔	신군청내	2(2)	1487	0	0	24546	24546	14546	10000	3500(0.14)	무
태안	TAEANTEL	무상임대	0(0)	2300	0	0						무
김제	KimjeNet	시청사내	4(2)	4791	10	9	93992	92992	24454	69538	30860(0.33)	유
군산	KIS	시청사내	6(2)	15596	0	1	30943	41943	17943	13000	24000(0.57)	무
이산	마한텔	공공기관내	5(3)	5592	0	6	95359	95359	19639	43200	48168(0.51)	중
진안	마이텔	군청사내	2(2)	2994	0	1	166770	28717	133370	0	0(0.00)	무
장성	방울샘	군청사내	9(2)	1165	9	2	82866	81966	82866	0	0(0.00)	무
함평	함평텔	군청사내	2(1)	1691	0	1	154030	121174	103901	50000	15337(0.13)	유
나주	NINS	시청사내	3(1)	2868	0	2	65678	34964	35678	30000	5637(0.16)	무
목포	MAINS	무상임대	4(1)	11048	0	1	33484	32984	18484	0	15600(0.47)	우
순천/ 광양	동부텔	유상임대	5(4)	12763	32	8	799364	57033	21102	37500	29863(0.52)	유
해남	HINTS	공공기관내	3(3)	10243	23	1	39408	39408	19408	20000	17887(0.45)	무
구미	Kumitel	공공기관내	1(1)	5200	0	0	161544	21016				무
안도	Hine-P (ADRIC)	공공기관내	1(0)	2875	10	1	37000	46879	22000	0	11317(0.24)	무
경주	경주텔	무상임대	1(1)	10524	0	6	103230	58823	63230	40000	19818(0.34)	무
영덕	이스텔	시군청내	3(1)	11579	2		63787	63787	18175	45612	14000(0.22)	
산청	천왕봉베트	시청사내	2(1)	1538	0	0	42167	27696	15171	22106	5800(0.21)	무
양산	양산텔	군청사내	3(2)	2593	20	1	59336	59336	24336	35000	24031(0.40)	유
밀양	MIRYTEL	공공기관내	1(1)	6896	0	0	20198	20198	0	20000		무
거창	kctel	군청사내	3(3)	6710	10	4	65688	65688	9588	50000	26258(0.40)	유
제주	SAMDATEL	무상임대	4(3)	53	12	1	18906	18906	18406	0	4500(0.25)	

주 : 표에서 빈칸은 자료누락
금액의 단위는 천원

한편 정보이용실태를 센터설립의 주관기관인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1996년 1월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 현재까지 지역 정보시스템 평균가입자는 361명, 평균이용시간은 3,249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지역별 정보이용구성비를 살펴보면 <표 3-8>과 같다. 각 지역별

로 정보이용은 전자게시판, 공개자료실, 생활, 산업, 서비스안내, 행정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성비는 1995년도의 전자게시판, 산업, 행정 등의 순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8> 지역별 공중망 서비스 실적('96. 1. 1~'96. 12. 31)

시 도	지 역	월평균 이용시간	월평균 가입자수	정보별 이용구성비(%)							
				서비스안내	행 정	생 활	산 업	전자게시판	공개자료실	동 호회	서비스개시일
서울	강화	936	206	2.6	1.9	7.4	4.7	25.4	44.8	13.2	'95.5.8
	의양	117	1414	4.4	3.0	7.1	14.3	42.2	25.0	4.0	'95.6.1
부산	밀양	793	500	5.2	0.0	6.8	0.0	49.1	0.0	38.9	'95.4.1
	거창	3063	249	4.1	1.9	5.0	3.4	37.1	29.0	19.5	'95.5.8
	산청	515	76	13.9	14.2	17.4	14.1	40.4	0.0	0.0	'95.6.1
경북	영덕	2351	466	9.7	9.6	4.2	5.5	40.0	18.5	12.5	'95.3.16
	구미	2413	320	5.0	7.5	7.1	9.7	53.5	0.0	17.2	'95.5.8
충청	청주	22947	882	5.8	4.8	15.4	9.9	23.6	12.4	28.1	'95.2.16
	태안	4031	109	6.2	11.2	15.9	18.6	36.3	0.0	11.8	'95.5.8
	청양	350	117	13.3	8.9	14.3	14.2	25.9	23.5	0.0	'95.6.1
전남	해남	4339	566	11.6	5.2	5.4	4.1	22.3	26.4	25.0	'94.8.16
	목포	3785	449	13.8	7.6	5.6	1.3	42.2	11.5	18.0	'95.5.8
	순천	1044	477	9.7	7.2	8.1	6.2	25.6	30.1	13.1	'95.5.8
전북	진안	202	73	16.0	5.9	11.1	14.8	14.3	25.7	12.2	'94.9.15
	이산	721	255	13.1	6.3	6.4	5.5	15.2	40.1	13.4	'95.6.1
	군산	7871	809	11.3	5.3	7.5	8.3	18.2	25.9	23.5	'95.4.17
강릉	강릉	285	177	16.6	0.0	32.4	22.5	28.5	0.0	0.0	'96.3.26
제주	제주	2548	639	8.6	5.4	7.6	6.5	25.4	19.3	24.2	'94.10.1
계		58491	6511	107.9	105.9	184.7	163.6	568.2	332.1	274.6	
평 균		3249.5	361.7	9.5	5.9	10.3	9.1	31.6	18.5	15.5	

자료 : 한국정보문화센터자료, 1997

현재 계획상으로는 지역정보센터가 1998년에도 전국적으로 10여개 정도 더 설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드러난 여러 가지 운영상 애로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지역정보센터 추진정책으로는 운영상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지역정보화의 추진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역정보센터의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정보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3. 민간운영의 지역정보센터

민간부문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지역정보센터들도 앞서의 지역특화 정보센터와 마찬가지로 명칭과 달리 센터의 성격이 불분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 민간(상용)지역정보센터는 대체로 지역내 정보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경우와 시스템사업에 치중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물론 양자가 엄격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의 성격을 갖는 센터는 주로 정보화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역유지 또는 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공중망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센터이며(부록 I 참조), 후자는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대기업들이 시스템사업의 지방진출을 목적으로 지역기업들과 연대하여 설립한 센터로서 정보서비스보다는 SI, SM, ISP 등 용역사업에 역점을 두는 센터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과 관련이 있는 정보서비스센터중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의 인디텔(INDITEL)과 강원도의 키텔(KITEL)에 대해서 간략히 실태를 소개하기로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 (재)인천정보통신센터(INDITEL)

INDITEL(Inchon Database &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System)은 인천지역은 물론 전국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인천시민, 공공기관,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시스

템으로서 (재)인천정보통신센터의 공중망 서비스명칭이다. 인천정보통신센터는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1993년 7월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동 센터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정보문화의 확산, 애항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지역내 교수, 언론인 등 민간부문이 추진주체가 되어 지역정보화분야에서 관·학·민 협조체제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처음 인하대학교에서 제안하고 그 취지를 인천시, 인천일보 등 지역기관들이 받아들여 상호협조체제하에서 센터를 발족시켰다. 설립과정에서 인하대학교는 정보통신기술 지도와 연구,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담당하고 인천일보는 홍보 및 정보요원 모집·관리, 인천시는 행정전산망과의 연계·협조, 민원정보제공, 관련 데이터베이스 개발비 지원, 인천상공회의소는 시민단체와의 연계 및 홍보, 기존 정보통신망사업자인 협력업체는 개발비 지원, 회원관리, 컴퓨터 설치 및 보수, 통신장비 및 일반관리비 지원 등 초기단계에서 관·학·민간 절대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요구되는 지역정보센터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인천정보통신센터는 설립이후 짧은 시간내에 지역주민의 호응을 이끌어내어 회원의 급증과 함께 한때는 HINET-P망에서도 중앙권 서비스망을 제외하고는 가장 이용시간이 많은 서비스망으로 각광받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서비스이용의 유료화와 함께 이용율이 급격히 떨어져 현재는 시스템운영에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다.

나. 강원도 (주)강원정보센터(KITEL)

수도권이외의 지방에서는 민간지역정보센터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곳은 (주)강원정보센터이다. 강릉에 본사를 두고 지역생활정

보지로부터 출발하여 순수민간부문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강원정보센터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보화의 추진 및 강원도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1993년 11월에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1994년 6월에 HINET-P에 공중서비스망 KITEL을 등록하여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 이후 시설 및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하여 (재)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통신, DACOM, 일부 (사)지역정보센터, 중소기업정보은행, 산업기술정보원 등과 연동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1996년에는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청을 비롯한 강원지역은 물론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234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 포럼 및 전국 10,400개 초·중·고(전국의 전문대와 4년제 대학교는 개통예정)의 포럼, 3,50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활용할 포럼 등이 개설되어 시민들의 정보교류의 창으로 활용하고 있다.

민간(상용)지역정보센터임에도 하이텔, 천리안 등이 유료서비스인데 반해서 KITEL은 모든 서비스가 무료이며 본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타통신망으로 접속시에는 GO 명령어를 이용한 직접 접속이 가능하다. 1998년 5월 1일부터는 KITEL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도 동시에 제공되어 별도의 홈페이지 구축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며 인터넷 계정서비스를 무료로 서비스함으로써 모든 회원에게 인터넷의 E-Mail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³³⁾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나우누리에 이어 5번째 통신서비스업체이며, 지역에 본사를 둔 정보통신서비스업체로는 국내 최다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다(현재 전국 이용자 25만 여명, 강릉 이용자 13,000여명, 강원도 이용자 35,000여명을 확보).

민간정보센터로서 수익성 측면에서도 노력을 경주하여 시스템개발비

33) (주)강원정보센터, 「강원 정보화 제안」, PC 통신 자료, 1998. 4

등의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수익창출에도 활발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즉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케 함으로써 사용자 증가로 인한 광고증가의 광고수입, 영리목적의 사업체 및 단체에 포럼개설, CUG(폐쇄이용자그룹)개설, SI사업(시스템구축사업), ISP사업, IP시스템 대행운영사업, 각 지역정보센터와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수익증가에 힘쓰고 있다. 또한 안정화단계 이전까지의 자금확보방안으로 지역생활정보지 사업수익확대와 유지들의 자본참여 유도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주통신망을 목표로 주식공모를 시도하는 등 센터운영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³⁴⁾

4. 시·도의 광역종합정보센터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정보센터의 광역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지역정보센터는 중앙정부와 민간부문 차원에서 꾸준히 설립되어 왔으나 광역자치단체 수준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정보화의 전진기지는 전무한 상태였다. 따라서 산발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정보센터들을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계층적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지역의 게이트웨이로 활용함으로써 광역시·도내의 정보유통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정보화 확산의 실질적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서 시·도별로 지역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계획에 따라 각 시·도마다 여건에 맞추어 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유형

34) 매일경제 1998년 2월 24일자 13면, 한겨레신문 3월 2일자 13면 등 90여회 각종 언론매체에 국민주 모집을 홍보

은 자치단체 자체설립형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하는 형태이다. 현재 부산광역시와 이 형태로 센터를 설립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북과 경남이 자체예산으로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둘째 유형은 제3섹터(민관합자)형태로서 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이 공동출자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이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이미 제3섹터로 지역정보센터를 설립, 운영중에 있으며 대전광역시도 금년내에 설립을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이다.

현재 설립중이거나 설립이 완료되어 운영중에 있는 광역종합정보센터의 개요는 다음 <표 3-9>와 같다. 이 중에서 대전의 경우는 현재 설립이 추진중에 있고, 경기도의 경우는 센터라기 보다는 지역정보시스템으로서 장차 센터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부산, 대구, 광주의 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3-9> 광역종합정보센터의 개요

지역	센터명	설립시기	투자비(억원) (지자체출자)	설립형태	비고
부산	부산광역정보센터	1998	3.6	자체	일부서비스중
대구	(주)대구종합정보센터	1997	40(10)	주식회사	
대전	대전지역종합정보센터	1998 (예정)	30(10)	주식회사	1998년 설립예정
광주	(주)광주광역정보센터	1996	21(5.25)	주식회사	
경기	경기넷	1997	32	자체	도청센터활용

가. 부산광역정보센터 : 자치단체 자체설립형

부산광역정보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본격적인 대민 정보서비스 실시, 지역정보

화를 위한 공공부문 인프라구축, 지역정보의 중심축(HUB) 형성 등을 목적으로 1997년중에 기본적인 DB구축 및 시스템도입을 거쳐 1998년부터 부분적인 서비스에 들어가 있다. 총 소요예산은 359,140천원이며 1997~2001년동안 정보문화의 확산기까지는 부산시가 직접 센터를 설립, 운영을 주관하고 2001년 이후부터는 민간위탁 또는 제3섹터 방식의 정보센터로 이관을 검토할 계획이다.³⁵⁾

주요 기능을 보면 ①DB정보의 주기적 확대 및 기능 보강 ②정보산업체 홈페이지 구축 ③인터넷을 통한 지역기업 및 상품의 국내외 홍보 ④자치구·군에 대한 웹 호스팅 서비스 ⑤공무원, 주민, 기업에 인터넷 전자우편 계정 부여 ⑥주요 교통관광 시설물에 정보단말기 설치, 운영 등이며 자치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만큼 주로 지역정보 DB구축 및 정보서비스 실시에 역할의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정보자료는 행정분야, 산업분야, 생활분야 등 세 분야에 걸쳐서 DB가 구축되어 있다.

나. 대구종합정보센터 : 제3섹터형

대구광역정보센터는 정보의 외부종속 탈피, 지역 고유정보의 창출, 정보통신 선도기업(leading company)의 육성, 정보화인력 수용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제3섹터형 주식회사이다. 대구의 경우는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 나오기 이전인 1994년 12월부터 지역정보센터의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실무추진단과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작업을 시작하여 1997년 6월에 창립총회와 법인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정식으로 대구종합정보센터가 출범하게 되었다.

35) 부산광역시 정보통신담당관실, 「부산광역정보센터구축계획」, 1997. 4

대구종합정보센터는 민관합자형태의 주식회사로서 총 자본금은 40억원이며 대구광역시 25%, 대구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체등 발기인이 25%, 그리고 나머지 50%는 지역주민의 공모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투자재원을 20여개 기업과 800여 주민으로부터 주식공모로 충당한 것은 지역정보화사업에 지역구성원의 동참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의의가 크며 절반의 주식을 일반 주민에 배분함으로써 발기인에 참여한 기업들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³⁶⁾

대구종합정보센터의 주요 기능은 ①종합정보 서비스사업(정보통신서비스, 정보지 발행 등) ②ISP(Internet Service Provider)사업 ③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사업 ④SI(System Integration) ⑤DB구축사업 ⑥정보활용교육 및 홍보사업 ⑦기타 정보유통사업 등으로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고유의 정보서비스이외도 수익적 부대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내부조직은 경영관리본부, 정보서비스본부, SI사업본부 등 3개본부,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광주종합정보센터 : 제3섹터형

광주광역시정보센터는 전남 목포권 및 광양권 그리고 하남공단 및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중추정보거점을 확보하고 지역의 풍부한 문화예술자원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와 지역기업, 지역금융기관이 주축이 되는 제3섹터형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 1994년 12월 이미 지역정보센터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가 주관이

36) 대구광역시 통계담당관실, "대구광역시정보센터 설립운영", 「지역정보화」 제2호, 1997. 11, pp. 37-41

되어 설립참여 희망업체를 모집한 결과 총 6개 업체(시 포함)가 참여하는 주식회사로 1996년 12월에 설립하게 되었다. (주)광주광역정보센터의 초기 설립자본금은 총 21억원으로서 광주광역시 25%, 광주은행이 23%, 기타 지역기업이 5~20%를 출자하였으며 2002년까지 자본금을 1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³⁷⁾

센터의 조직은 대표이사를 정점으로 2실(기획조정실, 정보시스템실),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전자상거래(EC) 구축 및 관련사업 ②지역정보화관련 실험프로젝트 ③공공정보서비스 및 시스템구축 ④연구용역사업 ⑤정보의 표준화 제정 및 보급 ⑥정보인력 양성 및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정보센터도 대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익성 확보와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서 정보서비스기능 이외에 다양한 부대 수익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³⁸⁾

제3절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한 평가

지역정보센터는 위에서의 실태분석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설립 센터와 자치단체설립 센터, 공공센터와 민간센터, 광역센터와 기초센터간에 설립 및 운영과정의 문제점도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감안하여

37) 광주광역시 정보통신담당관실, “광주광역정보센터 설립운영”, 「지역정보화」 제1호, 1997. 8, pp. 102-106.

38) 광주광역정보센터는 센터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업영역 확대와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유치, 병역특례업체 지정고시, 시 산하 지역전산감리기관 지정, 시교육청 DB개발사업 참여, 구청 및 사업소 전산화사업 참여 및 기타 다양한 SI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 (주)광주광역정보센터, 「'98년 종합 업무계획(안)」, 1997. 12 참조.

그동안 지역정보센터의 운영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된 사단법인 형태의 지역정보센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립·운영과정을 평가하기로 한다.

그동안 지역정보센터는 정보화의 불모지 다름없었던 우리나라의 지방여건에 비추어 볼 때 정보화의 초기단계에서 정보화라는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고 지역구성원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일깨우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초기단계에서 중앙정부주도의 지역정보화 사업들이 사업착수 수년이 지난 지금 당초에 의도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며 관련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형편에 와 있다.³⁹⁾

지역정보센터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다양하게 지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문제점이 상호간 복잡하게 인과적으로 얽혀있어 정리가 용이하지 않다. 예컨대 거시적으로 볼 때, 정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계획부재→추진주체의 난립→개념 및 목표의 혼란→지원제도의 미비라는 상호 복합적 인과관계를 갖고 있으며, 미시적으로 볼 때에도 재정상 취약→시스템·DB부실→정보서비스 미약→정보수요 부족→정보이용률 부족→정보화 마인드 부족→운영재원이 부족 등의 순환적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엄밀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논의의 편의상 크게 거시적 측면에서의 제도·정책상 문제점과 미시적 측면에서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39) 이러한 비판은 비단 지역정보센터사업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가 주도했던 각종 지역정보화관련 시범사업들의 경우에도 정부가 투자한 막대한 재정적 지원에 비추어 사업의 연계성, 파급성, 학습효과 등의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김상욱, "지역정보화 시범사업 개선방안", 「지역정보화」 제4호, 1998. 5, pp. 64-69.

1. 지역정보센터 정책·제도상 문제점

가.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종합적 계획의 부재

지역정보센터정책에 대해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지역정보센터정책의 전반에 관한 마스터플랜과 제도적 대책이 결여된 채 과상적으로 정책이 먼저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즉 국가 전체적으로 지역정보센터의 종류, 지역정보센터의 기능, 추진주체들의 역할 등에 관한 종합적 계획이 없이 중앙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지역정보센터를 추진함으로써 센터들의 개념과 목표, 성격이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센터들간의 연계성이 결여된 채 중복투자의 불합리함을 노정시키고 있다.

최근에 지역정보화 업무를 주관하게 된 행정자치부에서 수립한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지역정보센터에 관한 구상을 어느정도 담고 있으나 이것 역시 계획의 기본요소와 계획과정의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며 부처차원의 시책방향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타 부처 소관의 지역정보센터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못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또한 개별 지역정보센터들의 경우에도 설립당시 현재의 정확한 진단과 미래에 대한 분명한 예측을 담은 장단기 계획이 없이 설립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체로 지역정보센터의 추진내용을 보면 지역내의 유관기관, 학교 사업체 등과 통신망을 연결하는 데 머물러 있는 수준이며 센터를 이용하는 주 이용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떤 정보를 특화시켜 제공해야하고 관련된 기관들 사이에 역할분담은 어떻게 해야 할 지, 타 정보센터와는 어떻게 연계성을 가질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출발하는 졸속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시행정 차원에서 설립

에만 관심을 두었지 설립후 어떻게 운영, 발전시킬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⁴⁰⁾

나. 지역정보센터의 추진주체 다기화 및 개념과 목표의 혼란

지역정보센터정책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이 없이 다양한 추진주체가 저마다의 필요성에 따라 출발했기 때문에 지역정보센터의 개념, 성격, 목표 등이 불명확하고 혼란스럽다. 중앙부처의 지역특화정보센터는 각 부처별로 소관업무의 정보화를 지역단위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역의 정보화를 위한 거점으로서의 성격 및 역할과는 당초에 거리가 있다. 지역의 종합적 정보화를 표방하고 있는 광역정보센터와 기초정보센터간에도 주관부처가 달라 개념, 성격, 목표 등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지 못하다. 이미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기초정보센터가 상당수 설립,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자치부가 광역정보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양자의 성격과 역할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서로 주관부처가 달라 자치단체입장에서 양자의 계층적 연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별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정책의 난립과 혼란은 일본의 지역정보화 사례를 그대로 답습한 그동안의 중앙정부 주도의 공급자위주 정책에서 비롯한다.⁴¹⁾ 지

40) 이러한 비판에 가장 적합한 사례가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형태의 지역정보센터이다. 1994년부터 획일적으로 3년간 기금지원을 통해 꾸준히 설립을 추진했지만 설립후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의 상당수가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다.

41) 우리나라의 지역정보화 추진과정은 일본의 사례를 유사하게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치성 주도하에 각 자치단체들이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중앙의 각 부처들이 제각기 독자적 프로그램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우정성의 텔레토피아(Teletopia)구상, 하이비전시티 구상, 텔레컴타운 구상, 통산성의 뉴미디어 커뮤니티(New Media Community)구상, 정보화미

역정보화의 성공여부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구축 그리고 참여기관간의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고사하고 정부간에서조차 부성주의(sectionalism)의 편협한 사고에 젖어 협력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각 추진주체들은 정보화전략에서 기술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m)에 근거를 두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일방적인 그릇된 신념(myth)에 빠져 제각기 지역의 여건이나 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채 저마다 유사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데서 혼란과 낭비가 가중되고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부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보화의 추진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굳이 법규정을 떠나서도 지역정보의 절반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보로 추산되며 지역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의 대부분이 지역행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정보센터가 지역주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정보센터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정보센터의 설립, 운영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광역정보센터를 제외하고는 여타 모든 유형의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운영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정보통신부가 추진한 사단법인 형태의 지역정보센터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래도시 구상, 건설성의 인텔리전트시티(Intelligent City)구상, 도시거점 종합정비사업 그리고 농림수산성의 (Greentopia)구상 등 매우 다양한 지역정보화 사업이 병행 추진되고 있다.

정보센터로서 정보화의 지방확산을 위한 거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극히 제한되었기 때문에⁴²⁾ 설립후에도 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지 못한 채, 재정이 부실하거나 자료수집이 어려워 지는 등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라. 지역정보센터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불명확

지역정보센터가 존립의 기로에 서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중의 하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도 미비이다. 기존의 민간상용망(하이텔, 천리안, 유니텔, 나우누리 등)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정보센터를 굳이 설립한 이유는 유료로 제공되는 민간상용망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의 정보소외계층에게 PC통신을 이용한 정보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즉 정보복지측면의 성격을 갖는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C에서 제공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제외하고는 제도적인 지원이 전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데 부실의 원인이 있다.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설립당시의 DB구축 및 시설·장비구입비용에 거의 충당되기 때문에 보조금지급이 끝나는 시기부터는 전용회선 사용료, 공중망 메뉴이용료, 데이터 갱신비용,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등 센터운영의 최소경비조차 조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설립당시의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들은 설립주체로서 지역정보센터의 운영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핵심위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운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

42) 지역정보센터의 설립과정에 관여하는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경제관련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이 고작이다.

치단체에서도 설립시부터 배제되어 지원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예산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자치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거나 지원이 중단되는 등 '고무줄 예산'으로 센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나마도 일부 자치단체는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지원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부나 한국정보문화센터도 지역정보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밀한 평가작업이 없이 막연하게 3년 정도의 지원이면 외부의 도움없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선불리 판단하여 지원기간을 3년으로 획일적으로 한정함으로써 지역정보센터가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2. 지역정보센터 운영상 문제점

가. 지역특성화된 독자적 정보 DB의 부재

현재까지 구축해서 운영되고 있는 정보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DB가 지역의 정보제공자(IP)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이용자간의 단순한 정보중개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정보제공 유형은 독특한 정보나 지역 고유의 정보를 DB로 구축하거나 서비스하지 못한다는데 한계가 있다. 그나마도 정보화 마인드 부재로 정보제공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제공이 자발적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센터 운영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으며 제때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 입장에서 정보의 유용성을 느끼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정보화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특성화된 정보가 부족한 채 기존 통신망(천리안, 하이텔)과 차별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지역정

보DB로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물론 초기단계에서의 지역정보 센터는 정보제공자와 정보소비자간에 정보중개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역정보센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수요의 파악을 통해 정보수집 및 가공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독자적인 정보 콘텐츠의 개발과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

나. 시설·장비의 열악 및 시스템 용량과 회선 부족

대부분의 지역정보센터가 지원자금으로 하드웨어(서버용 장비, 개발용 장비, 통신장비 등)와 소프트웨어(운영체제, DBMS, 통신프로그램 등)를 갖추고 있지만 장비와 시설이 성능과 용량이 부족하여 멀티미디어 등 고품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특히 거의 모든 지역정보센터가 통신전용회선 1회선과 약간의 자체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바, 동시접속자가 늘어나면 호스트의 성능이 떨어져 가용 포트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접속이 불량해지며 일부 지역정보센터의 경우 접속자체가 아예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⁴³⁾ 또한 입출력 자료가 많아지면 시스템의 과부하로 정체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 지역내 고속 서비스 희망자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한 대화방의 연결 인원수를 소화할만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이용자의 접속을 위한 컴퓨터 성능향상 및 통신회선의 증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정보화추이에 부응하여 고속서비스 및 멀티미디어

43) 1998년 4월 30일 현재 Hinet-P망에 등록된 37개 지역정보센터중에서 6개 센터가 접속이 되지 않아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이다. 전라남도, 「시군 지역정보센터 활성화방안」, 제15회 지방행정정보화연찬회 자료, 1998. 6, p. 45,

서비스가 가능한 웹 서비스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전산기 확보 및 근거리통신망(LAN)연결 등 전반적인 시설과 장비의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다. 센터의 운영재원의 취약

지역정보센터의 운영의 가장 큰 관건이자 장애요인은 운영재원의 취약성이다.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센터 실태점검표」에서 지적한 문제점에서도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정보센터들이 센터의 운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은 운영재원의 부족을 공통적으로 꼽고 있다. 사단법인 형태의 지역정보센터들은 설립당시에는 3년간 정보통신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원되는 자금의 대부분이 시설도입과 시스템개발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중단되는 시점부터는 기본적인 센터의 유지비용 조차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원래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발했고 정보서비스가 유료화하기에는 정보의 질이나 이용자확보면에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별다른 자체수입이 전무한 현 상태에서 재정여건이 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강화지역정보센터의 경우 1997년 8월로 정보통신부의 보조금이 끊겨 MARITEL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인 전용회선료와 하이텔메뉴이용료, 시스템유지보수료 등도 자체조달이 어려워 존폐위기에 놓여 있음을 애로사항으로 토로하고 있다.⁴⁴⁾

앞의 표에서 보듯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거의가 인건비보조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신규개발이나 대외홍보 등의 업무는 업무

44) 행정자치부, 「지역정보센터 실태점검표」, 1997 참조.

를 내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도 상당수 군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거나 자체 재정보확보가 부족하여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재정적 어려움은 광역정보센터의 경우에도 역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물론 광역정보센터의 경우에는 부산과 같이 자치단체가 직접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또는 대구와 광주같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여건이 나은 편이지만 아직은 수익사업의 여건이 밝지 못하고 민간부문과의 경쟁이 치열하여 실제로 실적은 저조한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부대 수익사업에 치중하다보면 본래의 정보서비스분야에 소홀함으로써 본말이 전도될 우려가 없지 않다.

라. 지역정보시스템 이용률 저조

대체로 거의 모든 지역정보센터들이 해당지역의 정보화 마인드 및 정보이용능력 부족과 제공되는 정보서비스의 질적 낙후성으로 인해 충분한 이용자를 확보하지 못한 채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에 놓여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컴퓨터 보급율이 확대되어 컴퓨터를 보유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통신이용자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은 컴퓨터 활용이 일부 계층에 국한되어 있고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컴퓨터 활용능력이 부족하여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정보수요가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용능력도 극히 부족하여 중장년층 이상의 이용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⁴⁵⁾

45) 지역정보센터가 설립된 전라남도의 시·군에서 1개 읍·면씩을 선정하여 통리장 전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농촌지역의 정보화 수준을 대강 짐작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364명)중에서 PC를 보유한 가정은 32%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586급

예컨대 기초자치단체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청주지역정보센터의 경우에도 1997년 9월 현재 전체 이용자 30,665명중에서 20세 미만이 45.2%, 21-30세가 47.1%를 차지하여 전체의 92.3%가 3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직업별로도 전체 이용자의 81.1%가 학생이며 회사원이 9.3%, 공무원이 2.6%로서 학생이 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 주민의 이용은 극히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아직은 정보수요, 정보이용능력, 정보화에 대한 관심 등의 측면에서 정보의 이용이 일부 계층에 국한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표 3-10> 청주지역정보센터의 이용자 특성

지역별(%) 계=100.0%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9.5	2.5	2.8	3.1	0.9	3.2	5.5	3.5	3.9	50.1	3.4	3.0	3.8	4.0	0.8
연령별(%) 계=100.0%	20세미만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0세이상		
	45.2			47.1			5.2		1.7		0.5		0.3		
직업별(%) 계=100.0%	공무원			회사원			학생		가정주부		농어민		기타		
	2.6			9.3			81.1		0.5		1.4		5.1		

자료 : 행정자치부, 「지역정보센터 실태조사표」, 1997에서 발췌.

마. 센터 운영요원의 부족

위의 제시한 지역정보센터의 실태에 관한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지역정보센터가 운영인력부족을 애로요인으로 겪고 있다. 일부 극소수의 지역정보센터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운영요원이 5명 이내이며 그나마도 상주인력은 1~3인 정도이고 그중에는 상당수의 센터가 자치단

이상은 11%에 그치고 있다. 컴퓨터 이용능력을 보면 컴퓨터 기초활용정도는 71%, 문서작성정도는 68%, 컴퓨터통신이용은 84%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정보화교육과도 연관이 있어 전체의 76%가 전산교육을 받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전라남도, 앞의 논문, 1998. 6, pp 9-27.

체의 공무원을 상근근무자로 파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센터운영의 기본적인 업무조차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요원이 최소한 DBMS, C언어, 통신프로그램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나 교육기회가 부족하여 전문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이직율이 높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컴퓨터파일화된 초기자료가 미비되어 있어 대부분의 자료를 자체인력을 통해 재작성하여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제4장 외국의 지역정보센터 사례

제1절 유럽의 지역정보센터

1. WREN 텔레카티지(Telecottage)

가. 텔레카티지의 개요

스칸디나비아 제국(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은 80년대 중반에 지역 정보서비스센터(Information and Community Service Center : ICSC)를 설립하여 지역정보화를 추진해왔다. 스칸디나비아 제국은 대도시위주의 경제, 행정, 문화, 정보의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농촌 및 산간벽지의 이농현상과 과소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종의 사회실험(social experiment)으로서 지역정보서비스센터를 설립하였다.⁴⁶⁾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스웨덴을 중심으로 확산된 텔레카티지(Telecottage) 운동이다. 텔레카티지는 지리적으로 벽지에 위치한 산간농촌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시설을 갖추어 놓은 지역정보센터로서 1985년 스웨덴의 인구 13,000명의 작은 도시이며 노르웨이 국경에서 멀지않은 곳에 위치한 Vemdalen에 처음 설치된 이후 Scandinavia

46) L. Qvortrup, "Information and Community Service Centers in Scandinavia : A General Overview" in Qvortrup, L. et. al.(ed.), *Social Experiments with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Challenges of Innovation*, D. Reidel Publishing Co., Dordrecht, 1987, pp. 85-92.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 성장하고 있다.⁴⁷⁾

텔레카티지는 주로 학교, 마을회관, 도서관, 지방정부청사 등에 위치하며 센터를 구성하는 시설은 사무실, 교육장, 회의실, 이용자실, 휴게실 등이 공통적이다.⁴⁸⁾ 텔레카티지의 주요기능은 센터의 규모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① 정보서비스 기능 : 시장정보, 기업정보를 비롯한 국내외 DB정보 제공
- ② 정보기술교육 : 컴퓨터입문교육 등을 개방대학식으로 교육
- ③ 통신시설의 제공 : 텔레텍스트나 텔레팩스 등을 통한 국내 또는 국제간 통신시설의 제공
- ④ 정보기술의 자문 : 지역의 기업이나 기관을 상대로 정보기술에 대해 자문
- ⑤ 정보처리 서비스 :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 서비스 제공
- ⑥ 정치·문화생활의 장 : 회의 장소나 시설의 제공
- ⑦ 정보통신시설, 비디오제작시설, 원격근무시설(Telework) 제공

나. 영국 WREN 텔레카티지

텔레카티지는 최근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특히 영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영국 전역에만 약 150여개의 텔레카티지인 정보기술센터(Information Technology Resource Center)가 설립, 운영되고 있고

47) <http://www.worldtrans.org/GIB/BOV/BV467.HTML>

48) 텔레카티지가 주로 마을회관이나 학교 등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텔레카티지가 인구규모가 작은 지역사회공동체(communit)를 중심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그중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영국에서의 텔레카티지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수단으로서의 필요성과 상업적 활동의 욕구가 결합되어 영국식 텔레카티지의 모델이 정립되었다. 현재 텔레카티지 연합(TCA : Telework Telecottage Telecenter Association)에는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 전역에서 약 2,000여 회원이 가입하여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⁴⁹⁾

영국의 텔레카티지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의 하나인 WREN 텔레카티지는 영국 국립농촌기업센터(National Rural Enterprise Center)의 비영리 프로젝트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Warwickshire Stoneigh Park에 위치하고 있다.⁵⁰⁾ WREN에서는 주요기능으로 다음 5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 정보제공(Information)

텔레카티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자료를 보유하여 이용자나 방문객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정보화계획의 일환으로서 주민은 물론 중소기업에게 정보제공, 상담,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⁵¹⁾ 또한 텔레카티지는 원격근무자나 중소기업들에게 문헌자료의 'One-stop 상점'으로서 각종 문헌자료를 비치해 놓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기타 온라인서비스, 비디오, CD-ROM 등을 제공하고 있다.

2) 보육(Nursery)

49) <http://www.tca.org.uk/>

50) <http://www.nrec.org.uk/wren/informat.htm>

51) 영국에서 중앙정부의 정보화계획으로는 「정보화사회운동」(Information Society Initiatives: ISI)를 들 수 있으며 '모든 이를 위한 정보기술(IT for All)'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WREN텔레카티지는 원격근무자에게 보육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텔레카티지를 직장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전문 보육요원이 아이들을 돌봄으로써 이용자는 일에 몰두할 수 있다. WREN텔레카티지의 경우 정기이용자 및 부정기 이용자를 위한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용자의 욕구에 맞추어 보육에 책임을 지고 있다.

3) 사무서비스(Office Service)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텔레카티지에서는 서류작성, 회계정리, 번역 등의 사무서비스를 지역내 중소기업을 위해 대행해주고 있다. 또한 사무실 기능으로서 중소기업을 대신해 전화를 받거나 고객을 면담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⁵²⁾

4) 교육훈련(Training)

대부분의 텔레카티지는 정보기술에 대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훈련분야로는 특수한 소프트웨어 패키지, 업무기술, 특수직업자격증 등에 관한 훈련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교습, 비디오, CR-ROM 등을 통해 훈련이 이루어진다. 훈련과정은 ①공개교육과정(Open Learning) ②공식과정(Formal Course) ③개인교습(One-to-one Session)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텔레카티지에서는 컴퓨터기술에 관한 시험주관기관이 되어 원격근무자에게 원격근무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자격증 교부의 업무를 맡고 있다.

52) 고객의 입장에서도 전문지식을 갖춘 상담원과 대면하여 업무를 볼 수 있어 유리한 점이 있다.

5) 원격근무센터(Telecenter)

최근 유럽에서는 원격근무에 대한 관심과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텔레카티지는 원격근무(teleworking)를 위한 중심센터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원격근무를 위해 텔레카티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컴퓨터업체 종사자, 재택근무자, 무임금근로자 등이 많으며 조직의 상업적 고객들도 잠재적 수요자이다. 텔레카티지에서는 이들을 위해 필요한 기관들과 네트워크 및 협력관계를 맺어 다양한 원격근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즉 텔레카티지는 공유된 자원을 보유한 센터이며 원격근무의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로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⁵³⁾

2. Antwerp의 Telepolis⁵⁴⁾

Antwerp시는 벨기에의 인구 약 50만의 항구도시로서 Telepolis Antwerp(TA)라는 정보통신센터를 통해 시의 정보통신기술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조정하고 있다. TA는 1988년에 설립한 회사로 안트워프시의 전산센터(EDP-centre)와 사회복지센터(the Social Welfare Centre : OCMW)를 통합하여 만들었다. 1997년 현재 총 171명의 종업원과 연간 2

53) 원격근무를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①환경적 압력과 통근반대(anti-commuting) 운동 ② 원격근무의 생산성향상(45%이상) ③기업의 구조개혁(restructuring) 및 규모감축(down-size)의 압력 ④업무의 하청 및 외주(outsourcing)의 추세 ⑤삶의 질 추구 ⑥인구학적 변화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반대로 원격근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①밀착관리의 필요성(중간관리자의 우려) ②원격근무자의 사회적 격리 및 자기관리의 부담 ③탐욕의 필요성 ④재택근무에 따른 건강 및 안전문제, 세금, 정부보조, 권리 등의 보장에 관한 문제 ⑤자료의 보안 ⑥시설 또는 기술상 문제 등을 들 수 있는 바, 텔레카티지는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54) 이하의 내용은 다음 문헌 참조

Http : //www.dma.be/telepolis/

황주성, 이경희, 「지역정보화의 추진방향 및 지침수립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7. 12, pp.149-151.

천5백만 ECU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다. 이 회사의 주요고객은 안트워프 시정부, 사회복지센터, 그리고 안트워프 항만청으로서 원래 행정, 의료, 해양 등 공공부문의 전산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지금은 업무범위를 넓혀 등기소, 도서관, 세무서, 환경기관,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광범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네트워크 서비스 및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안트워프시에서는 '도시행정에 관한 고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정보통신비용을 줄이고 시민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책적 비전에 따라 세계에서 최초로 비동기전송(ATM)방식의 광통신 네트워크인 MANAP(Metropolitan Area Network for Antwerp)라는 대도시권통신망을 구축하였다. MANAP은 오늘날 70km의 구간과 도시내 30개 주요지점을 광섬유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ANAP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Telepolis의 정보서비스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광범위한 E-Mail시설의 이용(2,500명의 공무원 연결)
- 인터넷 웹사이트(DMA : Digital Metropolitan Antwerp)개발 및 구청과 박물관에 인터넷 Kiosk 설치
- 사회복지센터가 운영하는 병원의 MANAP연결
- MANAP를 통한 도시행정의 One-Stop 서비스(Single Point of Contacts), 원격화상회의(videoconference), 원격교육훈련(teleclass) 실시
- 중소기업정보화를 위한 전자데이터교환사업 시행
- 시영박물관으로부터 문화유산에 관한 정보의 시민 제공

- 인터넷을 통한 대학, 시립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의 연결
- 도시에 산재된 문화재 보존의 집중관리
- MANAP의 ATM망을 국가전체 및 유럽의 ATM망과 연결

1996년동안 TA는 벨기에의 기간통신사업자인 Belgacom을 비롯하여 안트워프 대학(University of Antwerp), 상공회의소 등과의 협력을 체결하였다. 또한 TA는 점차 중요한 정보통신수단으로 등장하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시민들과의 의사교환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에 따라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1997년 동안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

- 사이버펍(cyberpub) : 1994년 7월 Lange Nieuwstraat에 소재한 중앙공공도서관에 최초의 사이버펍을 설치한 이래 공공도서관 등 네 개 지점에 사설 사이버펍을 운영
- 인터넷 부스(internet booth) : 안트워프 시청, Borgerhout행정센터, 그리고 Hoboken, Berchem, Deurne, Ekeren, Merksem, Wilrijk의 구청사(districthouse)에 일반인이 무료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부스를 설치
- 인터넷 교육 : 벨기에 인터넷이용자그룹(BIUG : Belgian Internet Users Group)과 함께 800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을 실시
- 웹사이트(DMA)의 업그레이드 : 안트워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인터넷 웹사이트인 DMA를 현재의 통신중심에서 정보교류와 엔터테인먼트의 장으로 변환시키는 계획 추진

3. 맨체스터의 MTTP와 지방정보통신접근센터⁵⁵⁾

맨체스터는 지역의 정보사회구현을 위해 민관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해 1995년 MTTP(Manchester Telematics and Teleworking Partenership)를 설립하였다. 이것은 제3섹터 형식의 민관 공동조직으로 맨체스터 시의회와 맨체스터시립대학(Manchester Matropolitan University)의 공동투자자로 설립되었다. 이외에도 지역의 각종 민간기업과 지방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북서부예술단체(North West Arts Board), 멀티미디어 분야의 중소기업체와 개인 등을 들 수 있다. 맨체스터가 정보통신에 대해 진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처럼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 기인하는 바 적지않다. MTTP의 목적은 고도 정보통신서비스의 성공사례를 보이기 위한 시범사업과 이를 통한 지역정보고속도로의 구축에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⁵⁶⁾.

- 도시내 멀티미디어 수용능력을 높이고 정보고속도로와 관련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시의 정보통신인프라를 강화
- 지역내 또는 지역간 정보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나 원격근무 등 지역내 새로운 경제활동의 발전을 지원
- 교육·훈련, 문화·예술 등 타 분야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고도 정보통신의 활용을 촉진하는 시범사업의 추진

55) 이하의 내용은 TCO(1997), pp.56~58과 Carter(1997)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음.

56) D. Carter, "The Role of Innovation and Cultural Development in Supporting Economic Regeneration-Manchester's experience as an Information City", 1997 form E-Mail DAVE.CARTER@MANCHESTER.GOV.UK

MITP사업의 핵심은 지역 요소요소에 주민들과 기업, 공공기관 등이 정보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소위 「지방정보통신접근센터(local telematics access center)」를 설립하고 이들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 또한 이 센터는 교육·훈련과 기술지원 및 자문, 그리고 원격근무와 전자상거래를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맨체스터시립대학에 소재한 맨체스터 멀티미디어센터(Manchester Multimedia Center : MMC)이다. MMC는 1996년에 개원되었으며 지방정보통신접근센터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역할을 수행한다. 센터와 그 네트워크의 구축에는 EU의 구조기금(Structural Fund : ERDF and EDF)이 일부 투입되었다. 총 12개의 지방정보통신접근센터가 계획되고 있는데, 이 중 4개는 전자마을회관(Electronic Village Halls : EVHs)으로 알려진 기존의 유사시설을 개선하여 활용한 것이며, 나머지 8개는 새로운 시설로 설립할 예정이다.

MITP의 작업중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지역경제의 주요 부문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예술 및 문화산업이 중요한 목표로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이 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지만, 사회의 소외계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고려되었다. 멀티미디어 센터는 다양한 범주의 문화조직과 개인 그리고 멀티미디어분야의 중소기업, 문화산업 등과 공동작업으로 정보통신 응용서비스를 활용하여 이 분야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보통신분야의 참여자와 문화산업계의 참여자들간에 정기적인 모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멀티미디어포럼(Manchester Multimedia Forum)을 결성하였다. 일부 접속센터들은 '전자예술' 등과

같은 문화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학 등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혁신적인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고 아울러 1998년에는 맨체스터에서 국제전자예술심포지움(ISEA '98)을 개최할 예정이다.

제2절 일본의 정보통신거점시설

1. 일본의 정보통신거점시설 개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거점시설의 개요를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지역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지침」에 기초하여 자치성에서 전국의 都道府縣 및 市町村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정보화계획·지역정보화시책 상황조사」의 1996년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⁷⁾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 제3섹터 등이 사업주체가 되는 지역정보통신거점시설에는 ①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시설, ②CA TV, 비디오텍스, PC통신 등을 위한 센터집중적 기능을 가진 시설, ③ 컴퓨터요원 등의 인재육성·연수시설, ④ 최신의 정보통신기기 등을 전시하는 보급개발시설 등이 포함된다. 먼저 정보통신거점시설의 운영주체별 상황을 보면 <표 4-1>과 같다.

57) 情報政策研究會(自治大臣官房情報管理室内), 「地方公共團體における地域情報化施策の概要」, 第一法規, 東京, 1996, pp. 23-25.

<표 4-1> 정보통신거점시설의 운영주체의 상황

구 분	개 설	개설규정	합 계
직 영	185	25	210
공 사	32	3	35
제 3섹터	214	12	226
그외 기타	41	2	43
미 정	0	4	4
합 계	472	46	518

총 518개의 정보통신거점시설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직영에 의한 것이 210개소(40.5%), 공사에 의한 것이 35개소(6.8%), 제3섹터에 의한 것이 226개소(43.6%), 그밖의 주체에 의한 것이 43개소(8.3%) 그리고 미정이 4개소(0.8%)로 되어있어 제3섹터 형태와 자치단체직영 형태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거점시설의 기능별 정비상황은 <표 4-2>와 같다.

<표 4-2> 정보통신거점시설의 기능별 상황

구 분	1996년 4월 1일 현재		1995년 4월 1일 현재	전년대비 (A/B)
	기능수 (A)	총시설수에서 접하는 비율(%)	기 능 수 (B)	
정보통신산업 진흥거점기능	85	16.4	63	134.9
정보제공 거점기능	423	81.7	373	113.4
인재육성 및 연수기능	175	33.8	144	121.5
보급개발기능	92	17.8	74	124.3
그외 기타	3	0.6	0	

- 주 1) 계수에는 개설예정 시설도 포함된다.
 2) 하나의 정보통신거점시설이 복수의 기능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3) 총시설수는 518이다.

많은 정보통신거점시설이 복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총 518개 시설이 지닌 기능은 778개 기능으로 되어있다. 이 기능들중에는 「정보제공거점기능」이 423, 「인재육성·연수기능」이 175, 「보급계발기능」이 92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시설이 접하는 비율은 「정보제공거점기능」이 81.7% 「인재육성·연수기능」이 33.8%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능의 정비상황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124개 기능이 증가되었다.

2. 북해도 텔레콤센터⁵⁸⁾

북해도 텔레콤센터는 북해도의 札幌市에 위치한 제3섹터 형태의 지역정보통신센터로 북해도내 통신, 영상, 뉴미디어 등의 통신사업자들이 상호연대하여 이 분야에 필요한 핵심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통신, 영상소프트웨어 등을 개발, 제작, 보급하여 지역활성화와 정보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1993년에 4월 자본금 10억 5천만엔으로 설립한 이 주식회사는 지역내 약 132여개의 회사가 주요 주주로 되어 있다. 1990년말부터 우정성이 추진모체가 되어 추진되다가, 1992년 5월 설립검토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그 설립이 본격화되었으며 관련 법률로부터 인재육성사업과 유선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사업을 인정받아 1996년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의 주요사업내용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연수사업으로 대규모 스튜디오와 각종 연수시설을 설치하여 통신·방송관련 기술자들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연수프로그램과 세미나, 강연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다.

58) 이하는 (株)北海道 テレコムセツタ의 내부자료(1997 현재)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

- 방송·영상코스 : 아나운서코스, 영상기본육성코스, 프로그램제작 기술, 조명기술, VTR편집기술 등
- 지역정보화코스 : 지역정보화세미나, 전기통신행정의 규제완화에 관한 세미나 등
- 정보·통신코스 : 정보통신입문, 멀티미디어입문, 뉴미디어방송도입

둘째, 영상제작사업으로 지역내 독립프로덕션과 공동으로 지역성이 높은 CM, 광고 등 프로그램의 기획·제작과 개인 또는 기업의 전기물 등을 기획·제작 등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셋째, 관련사업으로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스튜디오나 연수실 등 시설 및 기기들을 빌려주는 임대사업이다. 동 센터에는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약 200석 정도의 이동석을 설치한 다목적 홀을 두고 있으며, 스튜디오와 편집시설도 임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방송, 오프토크 통신 등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업의 기획과 컨설팅도 수행한다.

넷째, 이 회사는 제3섹터의 특성을 살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발주되는 각종 관련사업들을 도내의 방송·영상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3. 센다이(仙台)市の (株)「COMMINET 仙台」⁵⁹⁾

주식회사 COMMINET 仙台는 宮城縣 仙台市에서 지역의 산·학·관이 협력·출자하여 설립한 제3섹터 형태의 지역정보통신거점시설이다. COMMINET 仙台는 인간중심의 정보거점도시 仙台市를 만들기 위한 목

59) 이하의 내용은 주식회사コミネット仙台會社 概要에 관한 1996년 7월의 내부자료를 참조하였음.

적으로 21세기를 향한 커뮤니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하는 사회기반(인프라)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총의로 설립되었다. 1986년 12월 자본금 4억 800만엔(수권자본금 12억엔)으로 설립한 이 회사는 창립당시에 富城縣(2.5%), 仙台市(4.9%), 仙台상공회의소(2.5%), 기반기술연구촉진센터(26.5%) 및 122개 지역기업 등이 자본을 참여하고 있다.

이 회사는 종업원 10명의 적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양한 정보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바, 주요 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워드프로세서·PC통신서비스

- 워드프로세서·PC통신 네트워크에 있는 전자회의를 통한 시민간 교류서비스, 홈쇼핑서비스, 전자도서관 등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 인터넷 관련서비스

- 인터넷접속서비스, 임대웹(www)서버 서비스, 웹(www)컨텐츠 제작서비스 등 인터넷 관련서비스

○ 지역유통 VAN서비스

- 소매점이나 도매점의 수발주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 유통 VAN사업에 참여
- 수발주(EOS)서비스, POS 서비스, 경영지원정보서비스, 대금결제서비스, 공동배송서비스 등 관련 서비스 제공

○ 출판사업

- 뉴스레터, 사내보 등의 편집, 디자인 및 출판사업

제5장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운영 모형

제1절 지역종합정보센터 정책의 기본방향

정보화의 성공적인 구현은 정보기술 및 시스템의 기술적 측면을 총칭하는 기술축과 기술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조직의 측면을 의미하는 인간축의 두 체제의 공조효과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바, 기술축의 정보기술 주도(technological push)와 인간축의 정보수요 견인(demand pull)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정보화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⁶⁰⁾ 그러나 그간의 지역정보화 추진과정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됨으로써 정보화라는 새로운 개념형성 및 파급에는 어느정도 성공을 하였으나 정보수요의 견인력의 핵심이 되는 공감대 확산은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정보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혁신을 거듭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혜택을 누려야 할 당사자인 일반 주민은 정보기술이 약속하는 미래에 대해 뚜렷한 공감대를 갖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같이 기술축의 주도과 인간축의 견인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하고 이것이 점차 확대될 경우 정보화로부터 소외되는 집단의 무

60) 김상욱,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방안",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21세기를 향한 지역정보화 추진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p. 39

관심과 좌절감에 기인한 저항이 나타나 정보화의 확산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⁶¹⁾ 따라서 이제는 기술축을 인간축에 접근시킴으로써 정보화라는 새로운 사상을 사회 저변에 확산시키는 일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며 지역정보센터의 의의와 역할이 강조되는 소리가 여기에 있다.

지역정보센터는 지역정보화의 거점조직 또는 중추시설로서 정보의 실수요자인 주민에게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사상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보이용의 생활화와 지역정보화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도입단계에서 정보문화의 수용과 정보수요의 확산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하에 다양한 형태의 특화(전문)지역정보센터와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역정보센터가 설립, 운영되어 왔으며 정보화의 불모지상태인 지방에 새로운 문화를 이식시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온 것으로 평가 된다. 그러나 앞서 문제점 정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지역정보센터정책은 계획, 제도, 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불합리한 시행착오를 노정시켜온 바, 전면적인 정책의 수정 내지는 방향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에 와있다. 특히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해온 사단법인 형태의 지역정보센터는 현 단계에서 정책의 지속적인 유지가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 만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향전환의 모색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토대로하여 지역종합정보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정책전환의 새로운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기로 한다.⁶²⁾

61) 김상욱, “지역정보화 전개방법”, 『지역정보화현황과 추진전략』, 한국정보문화센터, 1997, pp. 73-79

62) 김상욱, 위의 논문, pp. 87-92

1. 가상정보센터의 개념의 도입

그간의 지역정보센터는 낙후지역의 정보화확산을 목적으로 대부분이 중소도시 또는 농촌지역에 설립되었으며 물리적 시설위주의 센터로 운영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물리적 시설위주의 지역정보센터의 운영에는 최소한의 전문요원의 상주가 필수적 요건이다. 시스템을 직접 개발, 운영하고 있는 지역정보센터로서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갱신을 위해서는 전문요원이 상주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인력이 농촌지역에 상주하면서 근무하기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인력의 활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이나 하위지역정보센터에는 가상정보센터(virtual information center)의 개념을 도입하여 전문인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즉, 호스트 시스템은 전문인력의 지원이 가능한 광역정보센터나 도시지역 정보센터에 설치하고 농촌지역의 센터나 마을정보이용센터와 같은 하위지역정보센터는 호스트와 전용선으로 연결된 단말기를 설치하여 현지의 데이터 갱신은 하위지역정보센터에서, 시스템 갱신은 광역정보센터의 호스트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지역정보센터의 질적 강화

지역정보센터가 획일적 기준에 따라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이 설립되어 지원의 실질적 효과가 실현되지 못한 채 부실화를 면치 못하고 있다. 양적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설립후의 운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한 채 지속적인 추가 설립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는 형편이다.

센터의 부실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뚜렷한 전망과 비전이 없이 계속적으로 추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일 뿐이다. 오히려 지역에서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한정된 중앙정부의 재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신규설립을 줄이고 오히려 설립된 센터의 안정화 기반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정부지원의 차등화

지금까지의 지역정보센터정책은 모든 지역에 대해서 획일적 균등지원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모범적인 센터에 대해서는 자립의욕을 상실케하고 어려운 여건의 센터에 대해서는 더욱 부실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을 양적으로 줄이는 대신 한정된 재원을 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른 차등지원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정보화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이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지역정보센터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차별적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정보사업의 전개

현재 대부분의 지역정보센터들은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지침에 따라 기능적으로 유사한 호스트 시스템을 중복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거의 모든 지역정보센터의 데이터베이스가 유사할 뿐 아니라 기존의 공중망 메뉴와도 차별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정보센터의 데이터베이스는 공통정보와 지역특화정보로 구분하여 공통정보에 대해서는 중복적 개발을 지양하고 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해 모델 시스템을 확산

시키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대신, 개별 센터는 지역특성화된 DB구축에 주력하여 정보의 고유이미지와 정보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5. 수요자중심의 지역정보화 추진

지금까지의 지역정보화정책은 추진주체 위주의 공급자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점에 있어서는 지역정보센터도 마찬가지이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전제하에 양적, 획일적, 하향적으로 추진해왔던 지역정보화전략으로부터 탈피하여 실제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수요자의 욕구와 능력에 기초한 정보화전략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지역정보센터도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파악하여 DB를 구축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단순한 정보제공기능으로부터 벗어나 수요자의 정보화 마인드와 이용능력을 제고시키는 다양한 복합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수요자의 욕구(needs)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6. 지역정보센터정책의 지방주도형으로 전환

지역정보센터정책이 자치단체의 참여가 배제된 채 중앙정부 일변도로 추진됨으로써 지방의 현실여건과 괴리되는 폐단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운영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며 각자 장단점이 있는 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대신 중앙에서는 추진체제를 일원화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기획, 조정 및 지원을 담당하고 설립, 운영에 관한 구체적 선택은 지방이 결정하되 사후평가를 통해 지원을 차등화하여야 한다.

제2절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운영 모형

1. 지역정보센터의 계층적 구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가 되어 체계적으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의 새로운 비전을 지역주민에게 제시함으로써 정보화를 지역에 확산시키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거점시설로서 지역정보센터의 설립,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은 앞서서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지역정보센터가 무계획적으로 지방에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자치단체의 주도, 민간부문의 참여 등 모든 측면에서 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지역정보센터 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기능적, 공간적 체계를 정립하고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분야별 지역특화(전문)정보센터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각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되 자치단체별로 주민의 보편적 정보수요를 위한 지역종합정보센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하여 단일 마스터플랜에 따라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정보통신부(지방체신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군단위 지역정보센터의 추진체제를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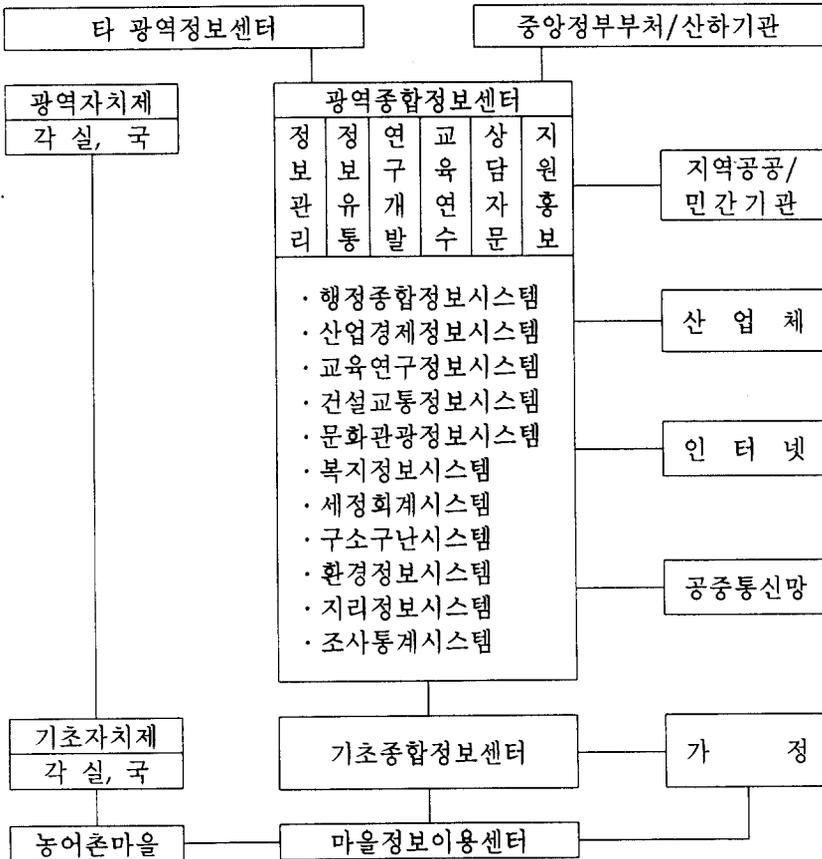
둘째, 지역정보센터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맞추어 광역종합정보센터 — 기초종합정보센터 — 마을정보이용센터의 3계층 구조로 구성한다.

- ① 광역정보센터 : 시·도 광역자체단체 차원에서 설치하는 정보센터로서 시·도 단위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사업과 기초정보시스템 및 특화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조정 등 지역정보화 거점역할을 담당한다.

- ② 기초종합정보센터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설치하는 정보센터로서 시·군·구 단위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등 주로 정보유통 및 정보화확산의 거점시설이다.

<그림 5-1> 지역정보센터의 계층적 구조



- ③ 마을정보이용센터 : 읍·면·동 단위의 마을 중심으로한 정보화 전초기지로서 정보접근성을 제고하여 정보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보이용시설이다.

셋째, 지역정보센터를 3계층 구조로 하더라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한 획일적인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은 지양하고 가능한 한 자치단체간 공동투자 및 협약 등을 통한 공동 설립, 운영을 지향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규모경제를 추구해야 한다.

넷째, 지역종합정보센터와 지역특화정보센터간 연계화를 위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정보센터에 관련된 기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2. 지역정보센터의 유형별 설립형태 및 방식

가. 광역종합정보센터

시·도 차원에서 설립하는 광역종합정보센터의 설립형태는 기본적으로 ①자치단체 직영 ②민관공동출자법인 ③민간부문 운영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민관공동출자형태는 다시 자치단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지방공사형태와 주식회사형태(제3섹터)로 구별된다. 기존에 설립된 광역종합정보센터들의 사례는 자치단체 직영방식과 제3섹터방식에 국한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서는 제3섹터를 권장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자치단체가 결정할 문제이다. <표 5-1>에서 보듯이 각각의 설립형태는 장단점을 공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센터의 역할과 기능, 자치단체의 단계적 정보화전략, 자치단체의 자원조달능력 등 여건과 특성을 충분

히 감안하여 자치단체가 스스로 선택해야 할 사항이다. 각각의 설립형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치단체 직영방식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을 자치단체가 전액 예산으로 충당하며 자치단체의 정보화부서에서 내부조직으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 현재 부산직할시와 경기도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북, 경남, 강원 등도 이 방식에 의한 설립을 계획중에 있다.

자치단체 직영방식은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고 경영책임이 명확하며 운영비의 안정적 조달이 가능하고 일반행정과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힐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반면에 비효율적 경영으로 흐르기 쉽고 환경변화에 비탄력적이며 초기에 대규모 설립자금확보가 필요하며 행정조직의 추가설치 또는 정원증설의 부담이 뒤따르는 단점이 있다. 대체로 기존의 사례를 보면 설립초기단계에서부터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정보화사업의 추진력을 강화시키려는 의지가 있거나(부산, 경기), 또는 지역산업을 취약하여 민자유치가 어려운 경우(강원, 전북)에 선호하는 방식이다.

2) 민관공동출자법인 방식(제3섹터 형태)

민관공동출자법인 방식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설립자본금을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서 공공부문의 출자비율이 50%를 넘는 지방공사 형태와 50%미만인 제3섹터 형태로 구분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광역정보센터의 규모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제3섹터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

서 지방공사나 재단법인에 비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적극 권장해 왔으며 대구와 광주에서 이미 주식회사 형태로 광역정보센터를 설립, 운영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제3섹터의 활용배경을 보면 첫째, 공공부분의 자금부족에 따른 민간자금의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으며,⁶³⁾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조가 가능한 영역의 확대에 따라 민간부문 인력 및 경영기법 활용이 요구되고 있고, 셋째, 종래 공공부분의 영역 중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고도화·다양화됨에 따라 유료화·기업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역정보센터에 제3섹터를 활용하는 경우 지역내 산·학·민·관의 참여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재원확보에 용이하며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자치단체의 통제·조정기능이 미약해지고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경영책임이 불명확해지는 등의 단점을 갖는다. 특히 지역정보센터의 경우에는 광역정보센터가 초기 설립시 많은 재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기술개발과 정보축적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지역기업, 지방언론, 지방금융기관 지방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내 유관기관 및 민간부문의 폭넓은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인식에 따라 제3섹터를 적극 권장해왔으나 최근 IMF 체제와 함께 민간부문의 경제여건이 어렵고 수익성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여 참여가 부진해지는 경향이 있다.

제3섹터를 지역정보센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에 출자하는 자본금 구성비율은 총 자본금의 50% 미만으로 하고(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제1항),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을 위해서는 지역정보센

63) 배용수, 「제3섹터의 이해」, 지방자치경영협회, 1995. 3, pp. 15-16.

터설립조례의 제정(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대한 지방의회의결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지방재정법 제15조).⁶⁴⁾

3) 민간부문 운영방식

이 방식은 기업 또는 개인 등 민간부문이 설립자금을 전액 출자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 공공자금이 소요되지 않고 경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반면 지나치게 수익성에 치중할 수 있으며 특혜시비의 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원칙적으로 수익에 대한 분명한 전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방식이며 광역정보센터의 성격과 역할 및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배제된 이 방식은 적절한 설립형태로 볼 수 없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재 여건으로서 광역종합정보센터의 설립형태에 대한 대안은 크게 자치단체 직영방식과 제3섹터 방식인 바, 다음과 같은 원칙과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수요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광역정보센터의 경우에도 모든 자치단체가 행정구역 단위에 따라 확일적으로 설립하는 것은 지양하고 가능하면 인접 자치단체간 공동 설립을 추진하도록 한다. 특히 광역시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도간에는 협약을 통한 상호 공동출자로 센터의 공동 설립을 추진한다.

둘째, 광역종합정보센터는 운영의 자율성과 정보화사업의 민영화에 대비하여 제3섹터로 설립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의 경제여

64) 제3섹터 형태의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는데 참고가 되는 ① 관련 근거법령 규정 ② 공사설립 추진절차 ③ 주식회사 설립절차 및 관련법규 등에 관한 자료는 부록을 참조.

건을 감안하여 정보화마인드가 높고 지역산업기반이 충실한 지역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셋째, 지역정보센터의 수익성 전망이 불투명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은 크며 센터의 공익적 역할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설립의 초기단계에서는 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참여의 폭을 크게 하고 점차 운영성과에 따라 지방공사 또는 제3섹터를 거쳐 민영화로 단계적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5-1> 광역종합정보센터의 설립형태간 비교

구 분	지자체 직영	민관공동출자법인		민 간 법 인
		지방공사형	주식회사형	
목 적	공익성	공익성+수익성		수익성
설 립 (출자) 방 식	- 지자체 전액 예 산으로 총당 - 지자체 내부조직 으로 운영	- 공공부문 50%이 상 출자	- 공공부문 50%미 만 출자	- 민간부인이 전액 출자
장 점	- 공공성의 최대한 보장 - 경영책임의 명확 - 운영재원의 안정 적 조달 - 사업수익의 비과세 - 일반행정과 종합 적으로 추진가능	- 원활한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용이 - 지자체감독을 통 한 공공성과 공 익성 확보 - 민간부문의 장점 부분 수용 - 요금의 수익자부 담 적용 가능	- 지역내 민관산학 의 공동참여로 대 표성 확보 - 재원확보에 유리 - 경영의 효율성 증대	- 전액민자로 가능 하여 공공부담이 없음 - 기업이윤의 국민 환원 - 경영의 효율화
단 점	- 비효율적 경영 - 환경변화에 비탄 력적 대응 - 초기에 대규모 예 산 소요 - 지자체 추가기구 설치 부담	- 한정된 예산에 따 른 사업규모 축소 - 민과 관의 책임 및 업무분담 불 명확	- 지자체의 통제 조정기능 미약 - 공익성의 제약 - 경영책임의 부명확 - 세제상 불리	- 수익성위주로 경영 - 사업에 대한 특 혜 논란 - 수익에 대한 세 금 부과
사 례	경기, 부산	경기(향후예정)	대구, 광주	

나. 기초종합정보센터

1) 기존 지역정보센터의 정리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정보센터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정보통신부가 추진해왔던 사단법인 형태의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단법인 형태의 지역정보센터는 일부 극소수의 센터를 제외하고는 운영이 부실하여 지역정보센터로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미 공중망 서비스에 접속 자체가 되지 않는 센터가 있는가 하면 여타 센터들도 대부분이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신규로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기 전에 기존의 지역정보센터를 정리함으로써 단일화된 통합추진체제하에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가) 기초종합정보센터 추진체제의 행정자치부 이관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단법인 형태의 지역정보센터의 추진체제를 빠른 시일안에 자치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지역정보센터의 성패에는 자치단체의 참여가 관건인 만큼 정보통신부의 법인 설립허가권을 지역정보화 업무를 책임지는 행정자치부로 이관하여 일관성있는 계획하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이때 계획의 수립과정에는 자금지원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부(한국정보문화센터)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기존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정밀진단 실시

기존 지역정보센터의 향후 대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45개 지역정보

센터의 운영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역정보센터에 관한 마스터플랜의 수립시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팀을 구성하여 ①대표(책임자)의 의지 ②이사진의 구성 및 역할 ③인력현황 ④시설 및 장비현황 ⑤DB구축 및 IP확보현황 ⑥시스템개발 유지보수실태 ⑦회원 및 이용자현황 ⑧운영재원 확보현황 ⑨정보서비스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진단을 통해 기존 지역정보센터의 존치 및 폐지를 결정한다.

다) 자치단체의 센터 존치에 대한 결정 및 사후조치

기존 지역정보센터의 존치 또는 인수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보화의 주체이며 지역정보센터는 지역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를 조기에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인 만큼 자치단체장의 정보화 의지, 자치단체의 정보화조직, 지역의 정보화수준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와 지역정보센터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센터의 정리를 결정해야 한다.

일단 방침이 결정된 후에 행정자치부는 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기존 센터를 신규로 설립하는 센터와 동일한 차원에서 표준 S/W의 보급, 교육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대해서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라) 기존 지역정보센터의 존폐 검토

(1) 1안 :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존치후 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

지역정보센터를 현행대로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존치하되 각종 사업추진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자치단체는 지역최대 IP로서 정보자료제공, 사업비 및 보조금 지원, 행정조직 및 인력 지원을 맡고 지역정보센터는 전문인력·기술지원과 정책·기술자문 등의 역할을 맡아 상호 협조관계하에서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는 ①공동사업 추진방식과 ②사업위탁 방식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공동사업을 통한 협력은 자치단체와 지역정보센터가 지역정보화사업을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며⁶⁵⁾ 사업위탁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역정보센터의 위탁처리케 하고 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을 자치단체와 센터의 분리된 조직에 의해서 추진하되 계약과 규정에 의해 상호협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와 지역정보센터가 그동안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에 적합하다. 자치단체와 지역정보센터의 원활한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의 법인 설립허가권을 행정자치부로 이관하고 아울러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정보화사업의 공동추진 및 위탁과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2안 : 자치단체가 센터의 인수

기존 사단법인 형태의 지역정보센터를 해산하고 이를 자치단체가 인수하여 내부조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와 지역정보센터간에 인수에 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센터의 자

65) 예컨대 광주 광역정보센터의 경우 시 교육청 교육정보망사업과 구청 및 사업소 정보망 사업에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립기반이 취약하여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경북 구미시, 인천 강화군, 충남 청양군, 전남 목포시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하며 대체로 1996년 이후에 설립된 지역정보센터들은 거의 재정적 자립이 어려워 센터의 운영을 자치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방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운영을 위한 인력, 예산의 확보 및 조직의 정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3) 3안 : 현행대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독자 존치

기존 지역정보센터중에서 여건이 양호하고 운영이 건실하여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없이도 독자적으로 존립이 가능한 센터는 현행대로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존속시키는 대안이다. 예컨대 충북 청주시의 경우와 같이 센터의 운영이 안정권에 들어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정보통신부의 법인 설립허가권은 행정자치부로 이관하고 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과 센터와의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4안 : 민·관·산·학 형태의 법인으로 개편

기존의 이사회를 재구성하여 활성화하고 자치단체 및 지역내 대학, 기업, 유관기관,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출자법인으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지역의 정보화 수준이 높고 지역경제 기반이 충실한 지역중에서 기존의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재정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기존의 법인을 해체하고 새로운 제3섹터 형태의 법인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은 기존의 사단법인 형태의 지역정보센터가 설립된 지

역이 대부분 중소도시 및 군지역이라는 점에서 적용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5) 5안 : 사단법인 해체(폐쇄)

센터의 재정여건이 극히 취약하고 운영이 부실하여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지역중에서 자치단체의 여건상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자치단체가 인수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조치와 함께 법인을 해체하고 차후에 다른 방식으로 센터의 신규 설립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5-2> 기존 지역정보센터의 정리대안

정 책 대 안		내 용	대 상	비 고
자치단체 참여(1안)	공동 사업	- 자치단체와 센터간에 정보 화사업의 공동추진 - 자치단체 인력, 자금, 조직 지원	- 센터와 자치단체 가 협조관계인 경우	- 법인 설립허 가권 변경-관 련 조례제정
	사업 위탁	- 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센 터위탁 - 자치단체 비용부담(지방공 기업법 제71조)	- 상 동	- 상 동
자치단체 인수(2안)	- 현재 운영중인 시설, 장비의 자치단체 무상이관 - 자치단체 조직으로 직영	- 센터가 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 고 있는 경우	- 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와 조직정비	
법 인 독자존치(3안)	- 현행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 로 존속 - 자치단체의 행정, 정보 지원	- 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독자운영이 가능한 경우	- 법인 설립허 가권 변경	
법인 개편(4안)	- 민관산학 형태의 별도법인 설립 - 자치단체의 출자 및 지원	- 지역산업기반 및 정보화수요가 양 호한 경우	- 출자 및 법인 설립 준비 - 관련 조례제정	
센터 폐쇄(5안)	- 자력운영이 불가능한 센터 의 파산 - 센터의 신규설립	- 자생력과 자치단 체의 인수의사가 없는 경우		

2) 신규 기초종합정보센터의 구축

가) 신규 기초종합정보센터의 설립형태

현행과 같은 정보통신부 주도의 지역정보센터정책이 행정자치부로 이관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정보센터가 존치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여타 시·군·구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따라 지역종합정보센터의 신규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기초종합정보센터를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설립형태로는 ①사단법인 ②자치단체 직영 ③제3섹터 등의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사단법인 형태의 지역정보센터는 정부(행정자치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의 간접적인 참여하에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한계점은 이미 기존의 지역정보센터의 경험에서 충분히 노정된 바 있으며 무엇보다도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상 자치단체의 참여 및 지원정도에 따라 센터의 성패가 좌우된다.

자치단체 직영방식은 지역정보센터를 자치단체의 전산조직의 일부로 설립하여 기본적으로 예산에 의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 초기단계의 우리나라의 지역정보화수준에 비추어 볼 때 자치단체의 적극적 개입없이 지역정보센터가 민간부문 독자로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센터를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정보화를 주도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제3섹터 형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나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적용가능성은 매우 적다. 따라서 그간의 경험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려하고 또한 향후 지역정보화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운영에 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불가피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현 단계에서 신규로 적립하는 기초종합

정보센터는 자치단체 직영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며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민관공동출자 방식 또는 민영화로 단계적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나) 기초종합정보센터의 단계별 구축

(1) 1단계 : 기반구축단계(자치단체 직영)

시·군·구 차원에서 신규로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종래와 같이 획일적 또는 일괄적 추진방식을 지양하고 정보화여건의 성숙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설립 초기단계에서는 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3명 이내의 계조직을 신설하며 센터운영에 필요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초기에는 무엇보다 정보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일깨우고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즉 지역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시연과 체험을 통해 정보접근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정보전문인 및 동호인들을 결집할 수 있는 장소로서 활용함으로써 정보화 확산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 필요하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시설로써, 「지역정보문화관」의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부와 협조하여 시범사업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 정보화전시관 성격의 지역정보문화관을 설치하여 점차 지역정보센터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지역정보문화관 설치사업의 개략적인 구상을 보면 다음 <표 5-3>과 같다.

(2) 2단계 : 정보사회 진입단계(민영화로 전환)

지역정보센터의 운영이 초기의 기반구축단계를 지나 정보사회 진입 단계로 들어서면 지역정보화의 거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표 5-3> 지역정보문화관 설치구상(행정자치부)

구 분	내 용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지역정보센터 설립·운영의 1단계 사업으로서 추진 - 지역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체험의 장 제공)이 주 목적 - 시연 및 체험의 정보접근 기회제공, 인재육성 및 인력공동 활용 장소 제공,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정보거점 조성의 기능 수행 - 시범사업의 추진후 사업결과 평가를 토대로 확대 실시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한국정보문화센터)와 공동으로 사업추진팀 구성 - 자치단체(지역정보센터)에서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설공사 및 장비를 설치한 후 직접 운영
사업지역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 지방의회, 공무원, 주민 등의 정보화에 대한 추진 의지와 마인드가 있는 지역 - 도심의 공공건물(시민회관, 예술회관, 복지회관 등)의 이용 등 시설설치의 공간확보가 가능한 지역 - 기본 운영인력(상주요원 : 1명, 상시운영인력 : 2명 이상)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 - 기본 운영비(통신회선료, 교육·홍보비 등 50백만원/년)의 조달이 가능한 지역
시범사업 지역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역의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중에서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농통합시, 군지역별로 1개 지역씩 시범사업 지역 선정
정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기관당 시설비 150백만원 지원 - 지원재원은 정보통신부(한국정보문화센터)와 협의하여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지원 - 지원사업비는 시설 및 장비도입비에 충당하며 운영경비는 자치단체 자체 부담

즉,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구축 및 관리와 서비스체제 확립을 비롯하여 교육, 홍보,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종합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보다 고도화된 응용서비스체제를 갖추어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해야 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 접어들면 센터의 조직형태를 민간부문 주도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민·산·학·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보참여연대를 구축하여 민간부문의 전문인력과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정보서비스의 상업화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마을정보이용센터

마을정보이용센터는 기본적으로 기초종합정보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시군지역이나 도시로부터 원격에 위치한 농어촌지역 또는 통합시의 외곽 지역 등의 읍·면·동 단위로 설립한다. 마을정보이용센터는 KIOSK 또는 컴퓨터 단말기 등을 설치하여 정보수요자가 정보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장소로서 동사무소 우체국, 백화점, 농협, 마을회관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여 이용의 접근성을 높인다. 마을정보이용센터의 설립은 전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직영하는 체제로 운영한다. 다만 이 경우에 우리나라의 농어촌의 정보화여건에 비추어 볼 때 종래와 같은 획일적 추진방식은 지양하고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선별하여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역정보센터의 기능

가. 광역종합정보센터

지역정보센터는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역정보DB 개발,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결, 각종 정보시스템의 통합 및 ONE-STOP 서비스기능 그리고 지역정보화의 촉진과 확산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의 정보거점시설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광역종합정보센터는 최상위 지역종합정보센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주민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 하부시스템이 자체 개발한 DB를 통하여 이용

자에게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국가 기간망, 지역전산망 등과 수직적, 수평적으로 연결하여 정보유통을 중추적으로 수행해야하며 지역정보화에 필요한 정보인력양성 및 교육, 정보화마인드의 확산, 정보기술의 개발 등 정보화 촉진기능 등 다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광역정보센터의 기능은 크게 세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역정보화 거점역할을 위한 종합기능이다. 여기에는 다음에 열거하고 있는 ①정보관리 ②정보유통 ③연구개발 ④교육연수 ⑤상담자문 ⑥지원홍보 등의 기능이 포함된다. 즉 광역종합정보센터는 협의의 지역정보화의 개념에 입각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유통뿐 아니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하위지역정보센터에서 담당하기 곤란한 다양한 정보화지원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① 정보관리 : 정보분류, 정보처리, DB구축(멀티미디어 DB 포함), 시스템 라이브러리 수집·제공
- ② 정보유통 : 정보수집, 정보제공,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전자상거래, One-Stop/Non-Stop민원서비스, 뉴스속보, 국가기간망 연계, 초고속정보통신망 연계
- ③ 연구개발 :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기술 연구개발, 신기술도입, 컴퓨터 활용방안 연구, OA방안 연구, 타 단체 연구개발 지원
- ④ 교육연수 : 지방공무원 전산교육, 지역주민 컴퓨터활용교육, 교재작성, 국내외 선진사례 시찰·연수
- ⑤ 상담자문 : 센터활용상담, 정보이용상담, 행정처리관련상담, 교육상담, 전자우편 질의응답, 정보통신시스템 설치·이용 자문

- ⑥ 지원홍보 : 중앙부처협력, 자치단체간 협의회 운영, 지역내 공공·민간단체 협력, 센터 이용자(회원)관리, 뉴스레터발행, 센터활동홍보, 국제교류

둘째, 광역종합정보센터에서는 중앙정부의 특화(전문)정보센터와 수평적으로 연계한 정보중계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현재 각 특화(전문)정보센터별로 정보서비스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광역종합정보센터에서 시스템간 연결을 통해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광역종합정보센터는 기초종합정보센터 및 마을정보이용센터의 호스트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위지역정보센터는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가 어려운 만큼 가상정보센터의 개념을 도입하여 광역종합정보센터의 호스트에 연결된 전용라인을 통해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갱신은 광역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나. 기초종합정보센터

시·군 단위에 설립하는 기초종합정보센터가 향후 주민과 직결된 지역정보화의 거점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현재 추진중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완료되고 점차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자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할 때 지역정보화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기초종합정보센터는 보다 지역에 밀착된 정보화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지역주민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기능에 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한다. 일반 주민에 대한 교육·홍보기능은 광역보다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담당해야 할 기능이다. 지역정보센터를 체험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여 주민이 직접 시연과 체험을 통해 정보매체에 익숙해지고 정보화의 효용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화에 관심이 있는 동호인 또는 전문인력들이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마인드를 지역 저변으로 확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정보화를 통한 종합민원서비스의 창구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민원행정이 점차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이양되는 추세이고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완료될 경우 기초종합정보센터가 Non-Stop 민원행정서비스의 창구역할을 맡아야 한다.

셋째, 지역고유정보에 대한 DB구축과 함께 정보유통의 거점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자치단체별 공통정보는 광역종합정보센터에서 맡더라도 기초자치단체의 고유한 특화정보의 DB 구축은 기초종합정보센터에서 담당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정보유통 및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다. 마을정보이용센터

마을정보이용센터는 엄밀히 볼 때 복합적 기능을 가진 지역정보센터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지역정보센터와의 접근성이 불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장비를 공동이용하는 간이시설의 개념을 띠고 있다. 아직은 마을정보이용센터의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개념이 가시적으로 분명치 않지만 규범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⁶⁶⁾

첫째, 지역정보유통의 일선창구로서 정보의 수발신기능을 담당한다. 즉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설단말기 또는 KIOSK를 설치하여

66) 김성태, "지역정보센터의 역할과 기능", 『지역정보화』, 제2호, 내무부, 1997. 11, p. 27.

일반주민이 직접 공공정보와 일반정보를 수신하거나 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표 5-4> 지역정보센터의 기능

기 능	세 부 내 역	광역 센터	기초 센터	마을 센터
정 보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처리의 용역수탁 사업 ● 정보시스템 제공 및 기술지원 ● 정보화 표준의 보급 	○ ○ ○	△	
정 보 제 공 통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행정 민원서비스의 통합제공 ● 독자적인 전문정보 수집 및 DB구축 ● 지역종합정보구축 및 제공(생활정보, 산업, 환경, 문화관광, 의료복지, 농림정보 등) ● 중앙/지방간, 공공단체, 행정기관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전달(전자계시판, 뉴스속보, 전자우편, 타전산망 연계 등) 	△ ○ ○ ○	○ ○ △	○ △
상 담 · 자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 설치에 대한 다양한 자문 ● 정보이용 상담 등 	○ ○	△ ○	○
정 보 화 교 육 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보화교육기관으로 활용 ● 민간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마인드 확산 ● 정보화에 대한 각종 시청각 교재확보 및 활용 ● 정보화 도서관 운영(공공, 정보화 자료 등) 	○ ○ ○ ○	○ ○ ○	△ △
연 구 · 개 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공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발전방향 연구 ● 신기술 연구 및 조사를 통한 도입 적용 	○ ○	△	
홍 보 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정부시책의 홍보 ● 각종 정보화 행사 개최 ● 정보화에 관한 정기간행물 발간(최신동향, 운영사례, 지방공공뉴스 등) 	○ ○ ○	○ ○ △	△

주 : ○는 주요기능, △는 보조기능을 의미함

둘째, 이용자들의 정보수요에 대한 의견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담당

해야 한다. 마을정보이용센터는 주민과 가장 근접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역정보화정책 및 지역정보시스템에 관한 주민의 의견과 욕구를 수렴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마을정보이용센터에서는 컴퓨터 및 통신 등 첨단정보화기기의 공동활용 장소가 되어야 한다. 지역주민과 기업이 정보기와 네트워크를 포함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직접 생활과 산업에 활용할 뿐 아니라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시킬 수 있는 거점시설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 지역정보센터의 시스템구성

가. 시스템구축의 방향

지역종합정보센터가 수행해야 할 기능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이다. 지역정보시스템의 기능은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자료의 검색, 편집, 출력이 주 기능이다. 따라서 이에 부합하는 지역정보시스템의 구성은 크게 자료의 집합체인 데이터베이스(DB)와 자료를 관리, 검색하는 자료관리시스템(DBMS : Data Base Management System), 그리고 DBMS를 쉽게 이용하기 위한 사용자 편의체계(User Interface)로 이루어진다. 여기에다 지역정보시스템의 경우 지역자료와 지역내 하부지역의 자료가 지리적 속성과 함께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리정보를 편리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⁶⁷⁾

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지역정보화의 추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사

67) 김선기,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 1997. 2, pp. 90-92.

업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설계나 서비스의 종류 등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로 지역정보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을 몇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정보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개별 시스템들은 시스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상호 연계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단순히 시스템간의 상호접속의 차원을 넘어서 복수의 서비스 분야에서 정보를 종합화하여 제공하거나 타 시스템의 정보소재를 안내하는 등의 통합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동일한 데이터를 DB로 구축한 다음 이를 문자서비스, Web서비스 및 공중무인단말서비스(KIOSK)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일된 서비스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정보의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광범위한 정보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중앙의 시스템과는 물론 자치단체의 상호간에도 시스템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⁶⁸⁾ PC를 통한 재택역세스로 정보의 수발신이 가능하도록 공중패킷망, 전용PSTN, 인터넷망 등을 지원해야 한다. 우선 시스템의 각 노드간에 접속라인을 통해 외부망과 연결하고 지역내 주요 지점에는 KIOSK로 연결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제공하며 기존 시스템과도 LAN을 통해 연결하도록 한다.

68) 한국정보문화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 3월 현재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은 총 54개이며 이중 중앙부처 및 산하공공기관의 시스템이 2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시스템이 29개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여기에다 사단법인형태의 지역정보센터가 구축한 45개 지역별 시스템과 민간부문의 지역정보시스템까지 합치면 매우 다양한 시스템이 분산, 구축되어 있다. 한국정보문화센터, 「공공정보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역정보연계시스템구축계획(안)」, 1998. 5.

넷째, 다양하고 쉬운 방식으로 정보출력이 설계되어야 한다. 출력되는 데이터는 이미지데이터는 물론, 동영상, 애니메이션, 사운드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실감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뿐 아니라 메뉴별, 일자별, 기관별 정보검색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 주민들의 정보마인드 확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정보시스템의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한다. 시스템을 기획, 설계, 운영하는 각 단계마다 시스템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유효성, 효율성, 신뢰성, 안정성과 이용자측면에서의 유용성, 편리성 등을 검토한다. 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 시스템다운이나 컴퓨터범죄에 대한 안전대책, 컴퓨터조작에 따른 노동안전위생, 노약자나 장애자의 컴퓨터조작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대비책이 꾸준히 보완되어야 한다.

나. 지역정보DB의 개발

지역정보시스템의 활용성은 시스템 자체의 편리성에도 영향을 받지만 무엇보다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양과 질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신뢰성 있는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을수록 보다 바람직한 것은 당연하다.

DB의 구축을 위해서는 각 분야에 대해서 방대한 양의 자료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으로서 자치단체 수준에서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DB의 개발범위를 확정된 다음 계획에 따라 정보수요가 큰 것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점차 자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지역정보시스템은 정보의 내용에 따라 크게 ①지방행정분야 ②지역산업·경제분야 ③지역생활분야로 나누어 DB를 구축한다.⁶⁹⁾

둘째, 아직까지 지역차원에서는 충분한 정보컨텐츠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정보DB 구축시 모든 정보를 지역내에서 제공하기보다는 외부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외부 시스템과의 연결을 통해 정보를 공동활용하거나 연동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해야 한다.

셋째, 지역정보DB는 ①공통정보DB와 ②특화정보DB로 구분하여 광역과 기초간 역할분담을 통해서 중복개발을 방지하며 DB 등 시스템구축 전 과정의 표준화를 추진하도록 한다. 즉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공통정보DB의 구축은 광역종합정보센터에서 담당하며 기초종합정보센터에서는 당해지역에 고유한 특화정보DB의 개발에 전념하고 광역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도록 한다.

넷째, 지역특화정보DB에 대해서는 이용자(주민, 기업 등)의 정보수요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수요자중심의 DB구축 및 서비스방식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참고로 수용자의 정보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표 5-5> 와 같다.

다섯째, 기초종합정보센터 및 마을정보이용센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가상정보센터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스템운영은 광역종합정보센터의

69) 이 구분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특히 지역생활분야는 문화, 교육, 의료·복지, 연극 등 여러분야로 세분화할 수 있다.

<표 5-5> 지역정보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

분 야		지역정보서비스의 필요성(집단별)	
		전체	순위
행 정	전자문서교환시스템	4.26	1
	도로교통정보시스템	4.25	2
	공공정보통합제공서비스	4.22	3
	행정정보locator시스템	4.11	4
	시설물관리시스템	4.09	5
	공공시설안내/예약시스템	3.96	6
	부서간 화상회의시스템	3.82	7
	평 균	4.10	
교 육	대학/연구소/도서관이용서비스	4.05	1
	교육용S/W서비스	3.93	2
	도서벽지 원격교육서비스	3.82	3
	교육용교재 자료서비스	3.81	4
	학술정보서비스	3.80	5
	교육방법 자문용서비스	3.55	6
	평 균	3.83	
가 정	재택민원서비스	4.25	1
	지역안전서비스	4.23	2
	가정안전서비스	4.22	3
	홈뱅킹서비스	4.10	4
	휴대용 교통안내서비스	3.94	5
	대화형 영상정보서비스	3.92	6
	홈쇼핑서비스	3.82	7
	재택근무서비스	3.46	8
평 균	3.99		
산 업	수도, 가스, 전기자동점검서비스	4.12	1
	농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4.00	2
	중소기업정보시스템	3.76	3
	수발주시스템	3.64	4
	평 균	3.88	
의 료	응급환자처리서비스	4.18	1
	개인건강DB관리	4.01	2
	원격진료	3.94	3
	통합복지카드	3.84	4
	질병감시망	3.64	5
	의료부문CALS	3.64	6
	주민건강DB구축	3.61	7
	원격건강모니터링	3.41	8
평 균	3.78		
환 경	재해발생긴급통보시스템	4.17	1
	상수도온라인시스템	4.15	2
	대기오염상시감시시스템	3.86	3
	환경감시시스템	3.85	4
	환경영상정보관리/서비스	3.73	5
	지역기상정보시스템	3.64	6
	환경문헌정보DB구축	3.41	7
평 균	3.83		

주: 수치는 필요성을 5점척도로 측정한 값임.
 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초고속정보통신반 확산전략연구」, 1996, p. 152.

호스트를 활용하고 하위정보센터에서는 호스트와 연결된 단말기를 사용하여 데이터갱신을 담당하는 상호보완체제를 구축한다.

여섯째, DB성격의 자료는 1회 구축으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므로 정보제공처(IP)를 확보하고 기관간 정보제공협약을 맺어 온라인을 통한 자료갱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가급적 최신 자료가 구축되도록 한다. 또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축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다. 분야별 지역정보시스템 구축

1)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가) 목 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행정을 구현하고, 작고 효율적인 전자지방 정부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즉 지방행정 내부업무의 혁신 및 정보화를 통해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대민서비스의 One-Stop/Non-Stop체제 구축을 통해 주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나) 추진방향 및 사업예시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은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간 정보의 통합연계·활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추진중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간, 지방의 공공기관간 정보공동활용 수요를 발굴하고 민원업무의 ONE-STOP서비스화가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하위조직 그리고 지역내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우체국, 파출소, 농협...)과의 정보연계

를 통해 지역차원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 또한 도시 지역에서는 도시기반관리의 차원에서 정비하여야 할 각종 도시시설 및 교통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주민편의에 직결되는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한 사업을 몇가지 예시하면 다음과 같으며 행정의 속성상 중앙정부와의 협조체제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PC통신 등에 개설된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의 구축을 통해 정보제공
- 지방자치단체, 우체국, 세무서, 등기소, 병무청 등 각종 민원기관간의 정보 및 업무교류로 민원관련 정보 및 행정서비스의 ONE-STOP서비스의 실시
- 중앙 또는 광역단위에서 제공되는 민원행정서비스나 이에 관련된 정보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구득될 수 있도록 정보연계를 추진
- 그간 추진해왔던 지방행정전산화사업을 질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추진
 - 위성을 이용한 자치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 지방행정종합정보망(MOHA-NET)의 고도화
 - 행정종합정보관리시스템(AMIS)의 개발
 - 시·군·구용 공통행정업무 S/W 개발
 - 전산자원의 표준화사업 등
- 교통, 상하수도, 가스 등 도시기반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대주민 서비스의 효과가 큰 각종 지리정보시스템의 개발

2) 지역산업정보시스템

가) 목 표

지역산업 및 경제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생산, 공정, 유통, 금융, 제도 등 산업활동 전반에 관한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특히 지역산업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특화산업을 위한 외부정보 및 지역고유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내생적 발전을 촉진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때 지역산업정보시스템에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특성에 따라 관광, 농림수산업, 유통산업, 금융산업 등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산업의 유용한 정보를 포함한다.

나) 추진방향 및 사업예시

우선 산업정보DB를 지역 자체내에서 모두 구축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중앙의 관련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중인 산업정보화 계획 등과 연계하고, 지역내 상공업관련기관(중소기업청, 산업기술정보원, 상공회의소, 지방공업기술원, 과학기술정보센터, 농업진흥청 등)의 정보화계획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분야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농업, 유통, 관광, 금융 등 광범위한 지역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 자체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지원수단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기반(산업단지) 구축과 같은 하드웨어 및 자금·세계·기술지원 등의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제공해야 한다. 산업의 각 분야별 지역정보시스템의 추진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역중소기업의 정보화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지역사이버마켓몰 구축 및 지역중소기업 정보지원센터 사업과 연계
-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청, 공단관리사무소, 지방노동청, 산업기술정보원, 상공회의소, 지역내 각종 중소기업조합, 대학과 연구소 등의 중소기업(특히, 벤처기업) 정보지원기능을 통합
- 지방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강화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집중, 제공(전용 웹서버나 디렉토리서비스)

○ 지역특화산업 정보

- 지역내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 업종협회 등을 중심으로 지역특화 산업을 위한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연구나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지원사업
- 기술신용보증기금, 과학기술처 등이 지정하는 지역특화산업을 기초로 지역차원의 수요에 근거하여 추진

○ 지역관광산업 정보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체육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철도청,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지역종합관광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
- 관광지, 관광시설, 숙박시설, 쇼핑시설, 교통정보 등에 대한 정보와 예약시스템 등 지역관광 ONE-STOP 정보서비스를 구현
- 해외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지역은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에 외국어 관련정보를 제공

- 대규모 관광단지나 월드컵 개최지 등의 경우 MAN의 구축을 통해 하이비전, 공중단말기 등을 통해 생생하고 활기있는 도면정보, 이미지정보 등을 제공하는 지역이벤트 정보유통체계를 구축
-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한국문화공간안내시스템(문화부), 전국문화유적정보DB구축(문화재 연구소) 등의 사업과 연계

○ 지역농업의 정보화

- 지역농산물 유통정보체제 확립(11개 지역도매시장 가격정보), 시설채소 주산지 생산·유통지원시스템 구축(9개군 41개 시설채소 주산단지에 정보지원), 지역특화농산품에 대한 DB구축(16개 지방 특성화대학) 등 중앙부처의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차원의 정보화 구축
- 농림수산정보망에의 접속창구 확대(기초지역정보센터 또는 농어촌 마을정보이용센터에 접속) 및 농정관련 온라인 민원사무처리를 실시

○ 지역물류·유통의 정보화

- 복합화물터미널과 컨테이너기지 등 유통거점과 집배송단지 등 지역물류거점의 정보화 추진
- 지방의 상설시장이나 쇼핑센터 또는 정기시장 등 상점가의 정보화와 지역적 전문성과 특수성을 지니는 중고시장, 가구시장, 한약재시장, 전통공예시장, 지역특산물시장 등 전문시장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3) 지역생활의 정보화

가) 목표 및 필요성

지역주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생활정보DB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상생활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의료, 안전, 환경, 교통, 문화 등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각종 단체나 모임을 중심으로 공동의 관심사를 갖는 개인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의 장(풀뿌리 지역네트워크)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있는 지역사회를 형성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나) 추진방향 및 사업예시

지역내 공공기관 및 각종 사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에 관련된 주요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수집하여 공급한다. 이때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련되는 교육, 의료, 안전, 환경, 교통 등은 우선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관련 정보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지역 공공기관들과 민간기업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통해 범 지역적 커뮤니케이션 운동으로 발전시킨다. 특히 지방자치의 발전에 부응하여 주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새로운 주민서비스의 제공, 주민부담의 완화, 주민참가형 행정의 실현 등 전자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 구현을 위한 지역차원의 다양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추진사업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 지역공공정보 통합제공

- 국가사회정보화계획에서 추진중인 지역단위의 사업들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역사회단체들의 참여도에 따라 다양하게 사업을 구성(부녀회, 각종 시민단체, 종교기관, 언론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도 지역사회 정보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교육, 보건의료, 청소년, 환경, 문화예술, 향토역사, 교통, 생활경제 등)

○ 보건·복지·의료 정보

- 주민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고령자를 위한 건강상담 및 안부확인 등을 가능하게 하는 간호지원센터 및 각종 의료기관과 가정의 단말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재택간호지원시스템을 도입
- 의료기관간의 의료비 교부사무, 사업실적의 집계, 등록환자의 장부 관리 등의 업무를 전산화하여 의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소방방재관련 정보

- 재해시 재해상황을 파악하고 대주민 정보전달을 위한 각종 방재행 정무선망의 정비를 실시
- 인터넷 및 PC통신을 활용하여 재해 등의 비상사태 발생시에 기상 정보, 피난대책, 피해상황, 지원물자제공, 구급의료기관간의 병동체 크 등에 관한 정보전달을 통해 신속한 소방방재활동을 실시

○ 교육·문화 정보

- 교육용 컴퓨터를 각급 학교에 배치하거나, 교육관련 공공시설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강사 및 지도자정보, 학습기회정보, 시청 각교재정보, 클럽활동정보 등을 제공
- 복수의 도서관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도서관의 도서·자료 등의 검색 및 예약을 실시

- 공공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과 시설관리사무소 등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시설의 예약접수, 이용상황의 파악을 전산화

5. 지역정보센터간 연계화

가. 지역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 및 접근창구 일원화

1994년부터 추진된 지역정보센터사업으로 현재 45개 지역정보시스템이 서비스되고 있으며 1997년 12월 현재 중앙정부 및 산하공공기관이 25개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공공기관이 29개 시스템을 개발하여 민간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민간 부문에서도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중에 있어 매우 다양한 지역정보시스템이 산발적으로 혼재되어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지역정보센터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할 때 시스템들이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정보이용이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지역정보센터간 연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역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첫째, 기존의 지역정보센터(45개 시스템)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시스템(54개, 시스템)에 대한 접근창구를 일원화하여 시스템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이용자에게 단일 ID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연계시스템간 정보의 통합검색기능의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⁷⁰⁾ 분산화된 지역정보시스템을 통일화하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접근을 생각할 수 있다.

- ① 1안 : 전국의 지역공공정보시스템을 통일화하는 방안으로써 우선

70) 한국정보문화센터, 「지역정보연계시스템 구축계획(안)」, 내부자료, 1998. 5 참조

1단계에서는 기존의 지역정보센터간 연계를 추진한 후, 2단계에서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시스템과 접속하고, 3단계에서는 민간지역정보센터의 시스템으로 접속을 확대한다.

② 2안 : 광역자치단체별로 시스템환경을 통일화하는 방안이다. 지역정보의 권역별 차별성을 감안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시스템의 환경을 통일화하되 가급적 광역정보센터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은 광역센터의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고 그밖의 지역은 시스템의 범용성이 가장 큰 표준환경으로 통일화시킨다.

둘째, 지역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지역정보화지원재단)와 한국정보문화센터가 협력하여 메뉴관리, 시스템간 연결을 위한 Host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시스템간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먼저 이용자들이 지역정보시스템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센터 전용의 독자적인 메뉴서버를 운영하여 이용률을 제고시키도록 한다.⁷¹⁾ 그리고 Host 프로그램은 지속적 유지보수를 위해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자체개발하며 지역정보시스템과 인터넷을 연동화하는 기능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연계시스템간 네트워크 구축은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설치하되 행정자치부, 한국전산원,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사업제안서를 심사하도록 한다.

나. 특화(전문)정보센터와의 정보교류확대

71) 현재 한국통신에 위탁하여 메뉴를 관리할 경우 월 37만원씩의 통신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자체메뉴서버로 관리할 경우 비용을 대폭(월 7만원 수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중앙부처에서는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역정보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특화(전문)정보시스템은 해당 전문분야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양과 정도(精度), 메뉴체계 및 서비스방식 등에서 자치단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종합정보센터는 행정, 산업·경제, 생활 등 모든 분야의 정보가 필요한 반면에 방대한 정보를 지역정보센터에서 독자적으로 수집, 축적, 제공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투자의 낭비적 측면이 많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가능한 한 연계화 또는 통일화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특화(전문)정보센터와 정보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특화(전문)정보센터와 지역종합정보센터간에 정보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정보의 상호교류를 통해 필요한 정보의 DB구축은 물론 주기적인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참고로 기존의 특화(전문)정보센터의 시스템 특성과 정보교류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면 <표 5-6>과 같다.

<표 5-6> 특화 정보센터의 특성과 교류가능성

소관부처	센터명	설립형태	DB구축현황 및 서비스	연계가능성
과 학 기술부	창원/마산 기계·재료 기술정보센터	한국기계 연구원내 연구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재료 기술개발정보 패키지화 ● 기계·재료 기술정보 검색엔진 개발 ● 중소기업 마케팅 전략화 지원사업 ● 자본재 중소기업간 정보교류체계 구축지원 등 	상호 정보교류
농 립 부	한국농림수산 정보센터	재단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관리 ● 국내의 농림수산정보 개발·보급·관리 ● 농업용 S/W개발·보급·관리 ● 농업생산·경영·유통지원 컨설팅 사업 등 	상호 정보교류
산 업 자 원 부	산업기술정보원	산업기술 정보원의 지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의 사업, 무역,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관리/보급 및 DB제작, 표준화연구 및 기술개발 ● 국내의 산업기술동향의 조사·분석 및 연구 ● 정부의 정보정책에 대한 자문·건의 	상호 정보교류
건 설 교 통 부	해외건설협회	사단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세계적 프로젝트 정보수집, 참여프로젝트 개발 ● 해외건설 진출의 효율화 및 전략연구 ● 인재양성, 민간외교, 종합정보 인터넷서비스 	상호· 정보교류
	건설기술 정보센터	정부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정보 유통사업 ● 건설사업지원 통합정보시스템(CALS)사업 ● 정보수집 및 관리, 정보인프라 운영 	상호 정보교류
	한국감정평가업 협회	사단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지공시지가열람프로그램 CD-ROM판매 ● 표준지공시지가책자 및 판매 ● 천리안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 	정보이용
	전국부동산중개업 협회의 부동산 거래정보망	사단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 ● 아파트시세동향 모니터제도 운영 ● 부동산매물정보전화안내센터 운영 ● 매물정보 영상홍보, 인터넷서비스 	정보이용
	한국도로공사	공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교통상황 등 인터넷서비스 	정보이용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센터	주식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거래정보망(PC통신) ● 정보지 및 지가동향보고 등 	정보이용
통 계 청	통계정보시스템 (KOSIS)	직접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처리(기획, 전산실 및 통신망 운영관리 등) ● 자료관리(통계간행물 발간, 시스템 자료관리 등) ● 통계정보(통계DB개발운영, 시스템 운영관리 등) ● 전산개발(프로그램 개발/표준화, GIS개발운영 등) 	상호 정보교류
경 찰 청	교통정보 서비스센터	직접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교통정보서비스 사업 - 교통소통, 사고, 면허, 교통일반 등 	상호 정보교류
특 허 청	특허기술 정보센터	직접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정보 :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 심판, 통계 ● 해외정보 - 서지사항 및 행정정보 : IFD - 초록, 대표도면, 전문명세 : 미국, 일본, EFO 	상호 정보교류

6. 지역정보센터의 운영재원조달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위탁처리 및 보조금지급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의 한 방법으로 ①자치단체와 지역정보센터간 공동사업시행과 ②지역정보센터에 대한 사무위탁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열악한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직접적인 목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자치단체와 지역정보센터와 긴밀한 협조관계의 구축이란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갖고 있다.

먼저 전자의 경우는 지역정보센터가 시스템설계,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개발, 네트워크구성, 정보서비스방식 등 운영체계의 설계 및 지역정보화사업에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참여함으로써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그로부터 센터의 운영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에 필요로 하는 사항 즉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지·보수,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자치단체의 홍보, 민원서비스 대행 등의 사무를 지역정보센터로 하여금 위탁·처리케 하고 비용 또는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는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업의 공동수행과 사무의 상호위탁에 관한 계약체결, 제3자에 대한 재위탁 및 비용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 등에 대해서는 따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다.

나. 국비 또는 지방비보조의 제도적 근거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했거나 인수한 공공지역정보센터는 물론

그렇지 않은 민간지역정보센터일지라도 지역정보센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센터의 운영이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먼저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본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지역정보화사업(지역정보센터사업 포함)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게 기부, 보조 및 금품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규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⁷²⁾ 일선 행정에서 보조금지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별법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표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예총(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및 제16조), 대한노인회(노인복지법 제29조), 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보호법 제20조), 체육회(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보훈단체(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 지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등 공공기관·단체에 대해서는 각각의 설립근거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에 관한 제도적 규정을 삽입하고 있음이 참고가 된다.

72) 지방재정법 제78조에서는 ‘국가는 지방공기업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출자할 자본금 또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에 대해 보조 또는 장기대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

<표 5-7>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보조사례 및 법적 근거

사 회 단 체	보 조 내 용	법 적 근 거
한국예총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경비보조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및 제16조
대한노인회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보조	노인복지법 제29조
대한소비자연맹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보조	소비자보호법 제20조
체육회	국민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보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보훈단체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상부상조로 자활능력배양을 위한 경비보조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 시·도지부	지방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경비보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다. 운영재원의 자체조달방안

지역정보센터의 운영재원은 자체조달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물론 지역정보화의 초기단계에서 수익성이 불투명한 지역정보센터사업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와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체사업영역의 확보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어느 정도 독립채산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첫째, 이용자의 확보와 함께 정보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지역정보센터를 만들어도 적정규모의 이용자가 확보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정보센터의 활성화와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센터가 제공하는 정보이용을 촉진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

다. 우선 초창기에는 지역주민과 지역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지역정보센터의 무료이용제도를 실시하거나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컴퓨터 교육시간에 지역정보센터의 견학 및 개발된 프로그램의 이용을 권장하는 등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지역정보센터의 운영이 어느정도 정상궤도에 진입하면 유료회원제를 도입하여 고정적 이용자를 확보하도록 한다.

둘째,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사업 또는 인터넷사업(SI, SM, ISP 등)과 같은 지역정보관련 기술용역사업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기술축적은 물론 사업영역확대와 함께 수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사업진출이나 사무위탁형식으로 공공정보화사업에 치중하되 기술축적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민간부문과의 협력사업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정보화에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신사용료를 지급하는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으로부터는 하드웨어와 통신망설치의 지원을, 언론방송사로부터는 홍보 및 멀티미디어 정보제공의 지원을, 상공회의소나 지방중소기업으로부터는 직접적인 자본참여를, 지방대학이나 연구소로부터는 소프트웨어의 기술지원과 교육연수 등을 각각 지원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이밖에도 지역유지들의 정보화마인드를 제고시켜 이사 및 운영위원의 연간회비 지원, 지역민간단체(부녀회, 청년회) 또는 기업체의 특별회원제 실시 및 협찬 광고와 안내문 게재 등 다양한 자체재원확보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제3절 지역정보센터의 추진체제 정비

1. 지역정보센터 추진체제의 개편

지금까지의 지역정보센터의 추진은 각 중앙부처별로 독자적인 필요성과 방침에 따라 제각기 이루어져 왔으며 추진주체 상호간 업무협이나 조정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각 유형별 센터간의 시스템환경의 표준화나 정보 또는 서비스의 연계화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없었으며 유사한 센터의 난립으로 중복투자의 폐단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센터의 입장에서 지역에서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이나 제안을 수렴하는 중앙단위의 접수창구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아 애로를 느끼고 있다.

각 유형별 지역정보센터간 업무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정보와 서비스의 연계화를 추진하고 센터간 중복투자를 줄이며 센터의 의견수렴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정보센터 추진체제를 <그림 5-2>와 같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치단체 단위로 설립하는 지역종합정보센터(광역정보센터, 기초 정보센터)에 관한 정책은 지역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여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⁷³⁾ 다만 이 과정에서 그간 지역정보센터 정책을 담당해 온 한국정보문화센터와 전반적인 설립계획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다.

둘째, 한국정보문화센터는 센터설립 및 운영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사전에 협의를 거치되 계획의 시행은 행정자치

73) 행정자치부에서 지역정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계획 및 시행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현재 사단법인 형태의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설립허가권을 정보통신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에서 맡고 한국정보문화센터는 기금 및 기술지원을 전담하도록 한다.

셋째, 행정자치부와 지역정보센터에 관련된 중앙부처간 업무협의 및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역정보센터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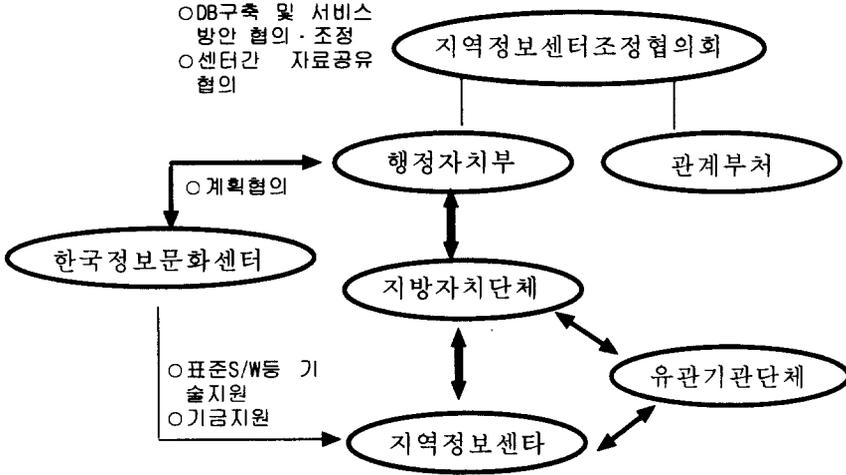
○ 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 지역정보DB의 구축 및 정보서비스 연계방안 협의·조정
- 지역정보센터와 특화(전문)정보센터간 자료 공동활용방안 협의
- 지역정보센터의 육성·지원에 관한 협의
- 각 부처에 관련된 지역정보센터의 공동애로사항의 수렴, 협의

○ 협의회의 구성

-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관련 지역특화정보센터를 운영중인 중앙부처 및 관련 산하기관·단체
- 지역정보센터
- IP협의회 등

<그림 5-2> 지역정보센터의 추진체제



<표 5-8> 지역정보센터추진 관련기관의 역할

기 관	주 요 업 무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정보센터 설립·운영계획 수립·시행 ○ 지역정보센터 DB구축 및 서비스 연계계획 수립·시행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S/W 개발·보급 및 기술지원 ○ 정보화촉진기금 지원
지역정보센터 조정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관련 전문정보센터를 운영중인 부처중심으로 구성 ○ 지역정보 DB구축 및 연계방안 협의·조정 ○ 서비스 방법 및 정보공동 활용방안 협의·조정
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정보센터 설립·운영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 조례제정 등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시책화
유관기관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정보 DB구축 및 연계, 정보공동활용
지역정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정보문화관 운영(교육, 홍보, 이벤트행사 등) ○ 지역정보 DB구축 및 회원관리 등 자치단체 계획 실행

2. 지역정보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의 일관성 유지

지금까지 지역정보센터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시정하고 지역정보센터정책을 새로운 방향전환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지역정보센터정책의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과 함께 중장기 사업추진방침을 정립하는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지역정보센터정책에 관한 마스터플랜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여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수립하게 추진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안은 지역정보센터조정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마스터플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진단과 처방이 다루어져야 한다.

○ 기존 지역정보센터의 실태조사 및 운영진단

- 광역 및 기초센터, 특화센터, 민간보센터 등에 관한 현황조사
- 각 유형별 지역정보센터의 기능 및 운영실태 평가

○ 지역정보센터의 성패요인분석

- 지역정보센터의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의 조사
- 센터의 성공 및 실패요인분석

○ 지역정보센터의 존폐 및 향후 설립계획

- 지역정보센터의 존치, 폐지, 통합의 기준 제시
- 지역정보센터 설립의 중장기계획 마련

○ 지역정보센터간 위상정립 및 연계화방안

- 각 유형별 센터의 위상 및 역할 정립
- 각 유형별 센터간 정보 및 서비스의 연계화 방안

○ 지역정보 DB구축방안

- 전국공통정보와 지역고유정보의 정의 및 범위확정
- 정보유형별 DB구축방안
- 정보제공체계(IP관리 등)의 확립

○ 지역정보 서비스방안

- 국민입장에서 제공해야 할 정보서비스 방식
- 광역 및 기초지역정보센터, 특화지역정보센터간 서비스연계방안
- 통합서비스체계내에서 회원관리방안

○ 지역정보센터의 운영자금확보방안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방안
- 센터의 자체자금확보방안

3.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운영조례 제정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지역정보센터에 관한 정책이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경우 지역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정보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이 아닌 공·사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정보센터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한다. 즉 조례에는 센터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이외에도 자치단체사업의 우선적 위탁, 정보화사업의 공동수행, 사업의 위탁대행시 비용지급, 보조금지급 등 센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주)강원정보센터, 「강원 정보화 제안」, PC통신 자료, 1998. 4
- 김상욱,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방안”,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21 세기를 향한 지역정보화 추진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 , “지역정보화 전개방법”, 「지역정보화현황과 추진전략」, 한국정보문화센터, 1997.
- , “지역정보화의 의미와 효율적 추진방향”, 「지역정보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행정자치부, 한국정보문화센터, 1998. 4.
- 김선기,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 1997. 2
- ,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289권, 1998. 12.
- 김성태, “지역정보센터의 역할과 기능”, 「지역정보화」, 제2호, 내무부, 1997. 11.
- 김택곤, “지역정보센터의 추진현황과 전개방향”, 「정보화로 가는 길」, 한국정보문화센터, 1997. 10.
- 광주광역시 정보통신담당관실, “광주광역시정보센터 설립운영”, 「지역정보화」, 제1호, 1997. 8.
- (주)광주광역시정보센터, 「'98년 종합 업무계획(안)」, 1997. 12 참조.
-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97~2000)」, 1997. 2.
-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지침」, 내무부, 1997.
- 대구광역시 통계전산담당관실, “대구광역시정보센터 설립운영”, 「지역정보화」, 제2호, 1997. 11.

- 대구광역시 통계전산담당관실, “대구광역시정보센터 설립운영”, 「지역정보화」 제2호, 1997. 11.
- 류승호, “미국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현황과 성격”, 「지역정보화」, 제1호, 1997. 8.
- 매일경제 1998년 2월 24일자 13면,
- 배용수, 「제3섹터의 이해」, 지방자치경영협회, 1995. 3.
- 부산광역시 정보통신담당관실, 「부산광역시정보센터구축계획」, 1997. 4.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산업기술정보원 지역정보센터 구축·운영 현황」, 내부자료, 1998. 5.
- 상공자원부 산업기술국, 「산업·기술 지역정보화모델구축사업추진계획」, 1994. 11
- 송인성, “지역정보센터 설치 및 육성방안”, 「행정과 전산」 제12권 제1호, 1990. 3.
- 여운방, “지역종합정보센터의 설립방안”, 「지역정보화발전 세미나」, 경기도, 1995. 9.
- 이수성, 황주성, 「지역정보센터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통신개발연구원 내부자료, 1989.
- 이만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추진계획”, 「지역정보화」 제4호, 1998. 5.
- 전라남도, 「시군 지역정보센터 활성화방안」, 제15회 지방행정정보화연찬회 자료, 1998. 6.
- 정보통신부, 「1996년 국정감사 자료」, 1996.
- , “정보화촉진기본계획”, available <http://www.mic.go.kr/korea/info/lead/lead32.htm>, 1997.
- , 「'97 정보통신연감」, 1998.

최남희, “지역정보화와 지역정보센터의 역할”, 『지방행정연구』, 제11권 제4호, 1997. 2.

한겨레신문, 3월 2일자 13면

한국전산원, 「1997년 국가정보화백서」, 1997.

, 「1997 국가정보화백서」, 1998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초고속정보통신반 확산전략연구」, 1996, p. 152.

한국정보문화센터, 「공공정보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역정보연계시스템구축 계획(안)」, 1998. 5.

, 「지역정보연계시스템 구축계획(안)」, 내부자료, 1998.

, 「'97 지역정보센터일람」, 내부자료, 1997.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지침」, 1997. 8.

, 「지역정보센터 실태점검표」, 1997

황주성, “지역정보화의 대상범주 및 사업영역”, 『지역정보화의 이해와 전망』, 한국정보문화센터, 1998.

, “지역정보센터 설립방안”, 『지역정보화』, 제2권, 1997. 11.

황주성, 이경희, 「지역정보화의 추진방향 및 지침수립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7. 12.

외국문헌

Center for Civic Networking, Civic Promise of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 A Vision of Change., 1996

D. Carter, “The Role of Innovation and Cultural Development in Supporting Economic Regeneration-Manchester’s experience as an Information City”, 1997 E-Mail DAVE.CARTER@MANCHESTER.GOV.UK

Gil Gordon Associate, "Telecommuting, Teleworking and other Office
g" available in <http://www.gilgordon.com/>

Ivan Horrocks and Christine Bellamy, "Telematics and community
governance : issues for policy and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Sector Management, Vol. 10 No. 5, 1997.

L. Qvortrup, "Information and Community Service Centers in
Scandinavia : A General Overview" in Qvortrup, L. et. al.(ed.),
Social Experiments with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Challenges of Innovation, D. Reidel publishing Co., Dordrecht,
1987.

Stephen Graham and Simon Marvin, Telecommunications and Cities,
New York : Routledge, 1996, pp. 166-170.

<http://www.worldtrans.org/GIB/BOV/BV-467.HTML>

<http://www.tca.org.uk/>

<http://www.nrec.org.uk/wren/informat.htm>

<http://www.dma.be/telepolis/>

<http://arom.etri.re.kr:80/htdocs/icc/regional/regi06.html>

<http://www.worldtrans.org/gib/bov/bv-467.html>

<http://www.pen.ci.santa-monica.ca.us/>

<http://www.bev.net/>

郵政省情報通信局, 「地域情報化に関する調査研究會 最終報告」, 1995.

情報政策研究會(自治大臣官房情報管理室内), 「地方公共團體における地域
情報化施策の概要」, 第一法規, 東京, 1996.

(株)北海道 テレコムセンタ의 내부자료(1997 현재).

株式會社コミネット仙台會社 概要에 관한 1996년 7월의 내부자료

< 부 록 >

<부록 1> 시·도별 지역정보센터 등록현황	138
<부록 2> 주식회사 설립절차 및 관련법규	140
<부록 3> 제3섹터형 지역정보센터 설립 근거법 규정	141

<부록 1> 시·도별 지역정보센터 등록현황

1) 경기, 강원	
92001. INDITEL - 인천지역정보 - 알림마당, 생활정보, 관광	92002. KITEL(키텔) - 생활/관광/의료정보
92019. MARITEL - 강화종합정보('94) - 특산/관광/생활/지역	92020. 의양텔 - 의양종합정보('94) - 행정/생활/관광/교육
92028. 삼청텔 - 강릉종합정보('94) - 관광/생활/행정/농수산	92029. 강원도정보 - 행정/관광/민원/생활
92031. 치악마을 - 원주지역정보 - 원주지역정보 종합	92040. 서부텔 - 안산시흥종합정보('95) - 공단/행정/학교
92045. 호반텔 - 춘천종합정보('95) - 행정/생활/관광	92046. KOKOTEL - 일산정보통신센터 - 고양지역정보종합
92052. WJTEL - 원주종합정보('96) - 알림마당, 생활정보, 관광	92001. 설악텔 - 설악지역종합정보('96) - 행정/민원/관광/생활
2) 부산, 경남	
92008. 경남광장 - 도정정보 - 도정참여/소식/민원/관광	92012. MIRYTEL - 밀양종합정보('94) - 관광/행정/생활/농업
92015. KCTEL - 거창종합정보('94) - 행정/농업/생활/관광	92021. 천왕봉 - 산청종합정보('94) - 농축산/관광/교육/생활
92027. PUSANTEL부산지역정보 - 부산지역정보종합	92030. 진주시 종합안내 - 시정참여/소식/민원/생활
92033. 양산텔 -양산종합정보('95) - 관광/생활/행정	
3) 대구, 경북	
92009. TK NET - 대구종합정보 - 생활/공공/문화/취업	92011. EASTEL - 영덕종합정보('94) - 생활/행정/산업/관광
92014. KUMI TEL - 구미종합정보('94) - 산업/행정/관광/생활	92032. 경주텔 - 경주종합정보('95) - 행정/관광/생활/산업
92039. ADRIC - 안동종합정보통신('95) - 생활/교육/관광	92047. 영주지역종합정보센터 - 소백텔
92048. 달성군행정정보센터 - 민원/관광/입찰/토론광장	91053. 대한민국정보화 - 한동대인터넷지원
91015. TINCBELL - 종합PC통신서비스	

4) 전 북	
<p>92004. 전북네트(CBNET) - 자료실/인터넷/학교</p> <p>92013. KIS - 군산종합정보('94) - 지역/문화/생활/관광</p> <p>92036. KIMJENET -김제종합정보('95) - 관광/농수산/생활</p>	<p>92011. MAITAL - 진안종합정보('94) - 특산물/생활/영농</p> <p>92032. 마한텔 - 익산종합정보('4) - 농산물/민원/관광/귀금속</p>
5) 대전, 충청	
<p>92010. CHAINS - 청주종합정보('94) - 산업/관광/특산/생활</p> <p>92023. 칠갑텔 - 청양종합정보('94) - 농업/구기자/행정/특산물</p> <p>92041. 금강텔 - 금강종합정보('95) - 행정/농업/교육</p> <p>92044. WIN -공주종합정보('95) - 관광/생활/교육</p> <p>92056. 예산텔 - 예산군지역종합정보('96) - 행정/농축산/관광/생활</p>	<p>92016. TAEANTEL - 태안종합정보('94) - 지역/관광/생활/문화</p> <p>92037. NAIS - 논산종합정보('95) - 생활/관광/행정</p> <p>92043. 밝은 충남도민광장 - 충남도정종합정보</p> <p>92050. 충주종합정보('96) - 생활/공단/관광/행정</p>
6) 광주, 전남, 제주	
<p>92005. HINETS - 해남종합정보('94) -알림마당/농수산/생활</p> <p>92017. MAINS - 목포종합정보('94) - 지역/산업/생활/기술</p> <p>92024. kcnet - 광주전남네트 - 생활/상품/사업/지역정보</p> <p>92035. NINS - 나주종합정보('95) - 행정/관광/교육</p> <p>92049. YOSU - 여수지역종합정보('96) - 행정/민원/관광/생활/교육</p> <p>92057. 광주지역정보(KJTEL) - 한국통신 전남본부</p>	<p>92007. SAMDATEL - 제주관광정보('94) - 교통/숙박/쇼핑/문화</p> <p>92018. 팔마텔-순천종합정보('94) - 행정/민원/교육/생활</p> <p>92034. HIT - 함평종합정보('95) - 농수산/행정, 생활/관광</p> <p>91038. 방울샘 - 장성종합정보('96) - 행정/농업/교육</p> <p>92051. 장흥텔 - 장흥종합정보('96) - 중소기업체/관광/농수축산</p> <p>92058. CJNET - 제주지역정보 - 지역/행정/관광/민원/생활</p>

<부록 2> 주식회사 설립절차 및 관련법규

순위	내 용	관련법규 (상법)
1	발기인 구성 - 3인이상	288조
2	정관의 작성 - 발기인이 작성 ① 8개사항 절대적 기재,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②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4 이상 ③ 회사의 공공 - 관보 또는 일간신문	289조
3	발기인의 의사록 작성 - 기명날인	297조
4	주식인수 통지	304조
5	주식의 납입 - 주식인수가액 전액 납입	305조
6	창립총회 ●주식납입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소집	308조
7	발기인의 보고 ●발기인은 회사창립에 관한 사항을 창립총회에 서면 보고	311조
8	임원의 선임 ●창립총회시 이사와 감사 선임	312조
9	이사·감사의 조사보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창립총회에 보고	313조
10	설립의 등기 ① 발기인 주식인수로부터 2주간내 ② 11개 사항 등기	317조

<부록 3> 제3섹터형 지역정보센터 설립 근거법 규정

법규명	조 항	내 용
지 방 공 기 업 법	제79조의 2	<p>(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p> <p>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 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 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 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증자 또는 추가출연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의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 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제 55조(주주권행사), 제64조(사업년도), 제71조(대행사업 비용부담), 제75조의2(공무원파견견임) 및 제75조의3 (권한위탁)의 규정을 준용한다.</p>
	제2조	<p>(적용범위)</p> <p>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 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p> <p>가.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 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p> <p>나. 기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 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p>
	제55조	<p>(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p> <p>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방자 치단체의 장 또는 그 장이 지적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 사한다.</p>

법규명	조 항	내 용
지방공 기업법	제64조	(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제75조의 2	(공무원의 파견·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의 3	(권한의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 방 재정법	제15조	(출자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법규명	조 항	내 용
상 법	제288조 제289조	<p>(발기인) 주식회사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p> <p>(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p>
지 방 자치법	제135조	<p>(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p>
지 방 재정법 시행령	제24조	<p>(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 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p>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Regional Information Centers(RIC)

Abstract and Propositions

Chapter 1. Introduction

- 1 Purposes of Study
- 2 Scope and Methodology of Study

Chapter 2. Regional Informatization and RIC

- 1 Regional Informatization Process
- 2 Concepts and Roles of RIC

Chapter 3. Overview and Evaluation of RIC

- 1 Types of RIC
- 2 Situation and Cases of RIC
- 3 Critical Review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RIC

Chapter 4. Case Study of RIC in Foreign Countries

- 1 RIC in Europe
- 2 RIC in Japan

Chapter 5. Modeling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RIC

- 1 Policy Directions of RIC
- 2 Model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RIC
- 3 Implementation System of RIC